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3. 6. 1.(목)~6. 21.(수)(2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구분	의 사 일 정	비 고
6. 1.(목) 10:00	본회의 (1차)	개 회 식	본회의장
		1.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6. 2.(금) 10:00	본회의 (2차)	1.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심의(계속)	의원 회의실
6. 3.(토) ~ 6. 4.(일)		휴 회(공휴일)	
6. 5.(월) 10:00	본회의 (3차)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원 회의실
6. 6.(화)		휴 회(현충일)	
6. 7.(수) 10:00	본회의 (4차)	1.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최종심의(계속)	의원 회의실

6. 8.(목) 10:00	행감특위 (1차)	1.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	본회의장
		2.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의원 회의실
6. 9.(금) 10:00	행감특위 (2차)	1.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의원 회의실
6. 10.(토) ~ 6. 11.(일)		휴 회(공휴일)	
6. 12.(월) 10:00	행감특위 (3차)	1.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	의원 회의실
6. 13.(화) 10:00	행감특위 (4차)	1.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계속) ◦환경보호과 ◦정보통신과 ◦농업축산위생과	의원 회의실
6. 14.(수) 10:00	행감특위 (5차)	1.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의원 회의실
6. 15.(목) 10:00	행감특위 (6차)	1.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계속)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원 회의실
6. 16.(금) 10:00	행감특위 (7차)	1.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계속)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의원 회의실
6. 17.(토) ~ 6. 18.(일)		휴 회(공휴일)	
6. 19.(월) 10:00	행감특위 (8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검토	의원 회의실
6. 20.(화) 10:00	행감특위 (9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원 회의실
6. 21.(수) 10:00	본회의 (5차)	1.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2. 조례안 등 최종 의결	본회의장 (토론 및 의결)

2023. 6. 1.(목)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21회 정례회 —



황 주 롱 의 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열고 결연한 의지로 출범했습니다. 동두천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단결력, 창의력, 그리고 강인한 의지력

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체력'입니다.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처럼, 체력의 보호가 없는 정신력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 그대로, 우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시민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체육'의 힘입니다. 그리고 시민 체육활동의 중심에는 바로 동두천시 체육회가 있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은 시 체육회가 시민과 전문 체육인들의 든든한 울타리 겸 운동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육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전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며,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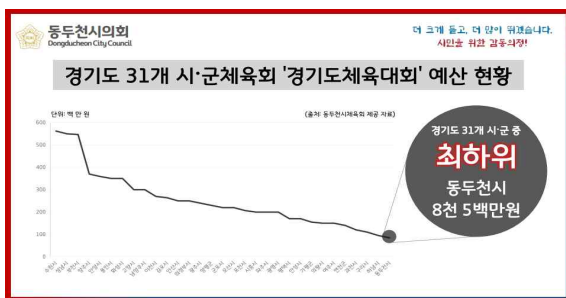
[표출자료 1]

2023년도 시·군 체육회 예산 현황

올해 체육회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연천과 가평, 과천 체육회보다도 동두천시 체육회 예산이 현저히 적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제(ceiling, 예산한도제)로 인하여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는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시는 체육회 지원에 너무도 인색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표출자료 2]

경기도 31개 시·군 체육회

'경기도체육대회' 예산 현황

경기도체육대회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 체육회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2부 출전 16개 시·군 중에서, 작년에는 16위, 올해는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적이 하위권인 이유가 우리 선수단의 기량 부족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Dongducheon City Council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뵙겠습니다.
시간을 귀중히 여깁니다!

경기도 인근 체육회 직원 현황 및 초과근무수당 기준

연번	시군명	인구수	직원수	급여체계	초과근무수당
1	의정부시	462,374	11	공무원 보수규정	제한없음
2	양주시	252,218	6	공무원 보수규정	57시간
3	구리시	188,671	7	공무원 보수규정	제한없음
4	포천시	145,373	7	연봉 제	80시간
5	영월군	122,767	9	공무원 보수규정	58시간
6	여주시	113,375	8	공무원 보수규정	48시간
7	동두천시	90,460	4	공무원 보수규정	15시간
8	과천시	78,929	8	공무원 보수규정	제한없음
9	가평군	61,915	8	공무원 보수규정	제한없음
10	연천군	41,744	5	공무원 보수규정	57시간

경기도 인근 시·군 중
최하위

(출처: 동두천시체육회 제공 자료)

[표출자료 3]

경기도 인근 체육회 직원 현황 및

초과근무수당 기준

경기북부 10개 시·군 체육회 중에서 우리 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이 최하위입니다. 직원 수도 가장 적을뿐더러, 초과근무 수당 지급 한도 시간도 15시간으로 가장 낮습니다. 타 시·군은 최소 48시간에서 최대 무제한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전주면, 동두천시 체육회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체육회 사무실을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한 작년부터는, 직원들이 당직 근무에도 투입되고, 아울러 장애인 체육 관련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의 업무량은 급증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는 대부분 주말에 열리는데, 대회가 있는 날에는 사실상 휴일을 반납하고 온종일 일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가 없는 일방적인 헌신에 대해 국가에 항의하는 우리 시가, 정작 체육회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모른 척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자기모순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체육’은 곧 최고의 ‘시민복지’입니다.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시 집행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동두천시 체육발전과 우리 체육인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관제 공무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동두천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힘이자 근본인 체육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넘도록 거의 동결된 체육회 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해 주십시오. 최소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 부끄럽지 않을 수준까지는 꼭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선수 육성 지원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체육대회인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시 선수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할 개인 시간을 할애하면서 훈련하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시 체육 위상을 높이려 노력하는 그들에게 마땅히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체육회 행정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체육인이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체육 행정 조직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육회 직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회 직원들이 대가 없는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 시간을 인근 시·군 기준에 맞춰서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체육발전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체육회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시민들의 체육 복지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15시간인 수당 지급 상한 시간 상향 조정을 요청합니다.

과거 동두천은 체육에 강한 도시였습니다. 축구와 배구, 태권도와 유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빙상 분야에서 동두천은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그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동두천이 체육 강소(強小)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길! 바로 '체육'이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반드시 실현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민선 체육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1.(목)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21회 정례회 —



임현숙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시민 곁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미국의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50년 넘도록, 거의 빠짐없이 해마다 장편영화 한 편씩을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작품성이 나 흥행 여부를 떠나, 1년마다 한 편씩 장편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아카데미상에 개근상이 있었다면, 그 주인공은 우디 앨런 감독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실한 영화감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80퍼센트는,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뭔가를 잘 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일단 해본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먼저인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찌 보면, 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성적우수상을 받는 것보다 개근상이나 정근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성실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 동두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은 갈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과 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진 지도 이미 오래전입니다. 무너져가는 학교 교실을 지키고 공교육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대략 전체의 10~15% 정도라고 합니다. 동두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 중고교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그 시작은 대부분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은 학교에 가지를 않고, 그다음으로는 집을 나갑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일이 커집니다. 점점 큰 사회문제가 되어가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은 학교 밖으로 그 무대가 옮겨지는 순간부터는, 보살핌과 지도·감독의 시야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시쳇말로 치고 박고 지지고 묶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학교라는 교육의 최소방어막 안에 있게 해야만 합니다. 꼭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설령 학교에서 잠을 자고 놀기만 하더라도, 어쨌거나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빠짐없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80퍼센트는, 일단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간에 일단 학교에 매일매일 나온다면,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 활동이든 각자의 적성과 취미를 살려 뭔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의 애향장학금 선발 부문에 (가칭) 근면장학금 또는 개근장학금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합니다.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소정의 기간 동안 빠짐없이 학교에 출석한 학생이라면, 그 성실성과 근면함을 높이 평가하여 장학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근면 또는 개근장학금은, 우리 아이들의 성실한 학교 출석을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청소년들의 학교 빠이탈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꼭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판검사나 의

사는 인구의 몇 프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성적 좋아서 법대나 의대 가는 아이들보다는, 작고 소박한 꿈을 키워가며 하루하루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평범한 아이들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계층은 평범하고 소박한 소시민들입니다.

성적이 우수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실함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성실하기만 해도 80프로는 성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머지 20프로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의 미래를 이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박형덕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6. 1.(목)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21회 정례회 —



김재수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의 양이 위협의 양보다 항상 많다.”

원래, 인간 심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실재하는 정도보다 더 크게 ‘공포’로 느끼게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장래 들이닥치게 될 어떤 위협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5월 25일 자, 경기북부시민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 화성 제외한 경기 30곳 2067년 ‘인주소멸위험’ -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화성시 빼고는 앞으로 44년 뒤에는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사라진다는 다소 섬뜩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다소 과도한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일으켜서 자칫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오히려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험. 단지 우리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정말 큰 일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은 더 분명합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 마련 역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차원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늘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인근 시·군의 인구 증감 추세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화성시만큼 잘 나간다는 ‘옥정’ 신

도시 인구 추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동두천이 인구 9만 선 붕괴를 걱정하는 동안, 양주시청에서는 옥정 신도시 주민등록인구가 5월 중 7만 명을 돌파하고 내후년에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인구 풍선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옥정 신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의정부나 서울 등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옥정 신도시가 동두천 인구를 빨아들이는 가장 큰 블랙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동두천을 떠나 옥정 신도시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양주시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전국적인 저출산 인구 감소 상황에서, 옥정 신도시의 인구 증가는 ▲옥정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 ▲전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덕정역 등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 ▲옥정호수공원 등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주요 원동력

으로 분석된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거 여건과 교통환경 개선. 바로 이것이 옥정 신도시 인구 증가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동두천 인구 감소의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도시 정주 환경과 인프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전남 해남군의 실패 사례를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해남은 전국 출산율 1위 지역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2.43명으로 전국 출산율의 2배였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아사히신문에서까지 취재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남 출산율 신화는 신기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먹튀 출산’이 만든 일시적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남군에 전입했던 사람들이 아이가 좀 자란 후에는 다시 타 지역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현금 지원성 인구 증가 시책의 함정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현금 지원

성 복지는 잠깐의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인구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정책 추진도 백년지대계라는 중장기적인 안목과 통찰이 필수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 그로 인한 조급증이 빚어내는 현금성 복지 지원 등의 단기적 처방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못지않게 심각한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보다 건설적이고 장기적이며 생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소개한 신문 기사 끝부분에 인용된 경기연구원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정책 제안을 소개합니다. ▲청년의 적극적인 활동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지원 ▲지방소멸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생활인구’ 정책적 접근 ▲시·군 특성이 반영된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담당관 설치 및 각종 행복 지원사업 개발 등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큰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도시가 매력적이면, 동두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 방지와 인구 증가 시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경제의 싹틔줄을 살리고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튼튼하게 조성하는 것. 그리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동두천의 매력 지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도시 설계에 초점을 두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닌,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6. 21.(수)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21회 정례회 —



임현숙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시민 곁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고, 오늘 드디어

제321회 정례회가 막을 내립니다.

감사장에서 뵈었던 반가운 얼굴들, 오늘 폐회식에서 각 부서장님을 다시 뵈

게 되니, 특히 더욱 반갑습니다. 부서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생활 만 1년이 되어가는 요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이란, 바로 ‘공기’와 같은 거로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공기.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공기’와 우리의 지방행정이 참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방행정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와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두천시민의 삶, 그 요소요소와 구석구석까지 지방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길을 걷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가고, 장사를 하고, 공원에서 가족들과 휴일을 보내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보살피어 주는 것이 바로 지방행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는 ‘공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동두천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공기’ 역할을 해 주고

계신, 부시장님과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모든 부서의 주무관님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방적인 보고와 지적이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쌍방향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시선으로 행정을 살피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듣고, 미처 잘 몰랐던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들을 만날 때,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잘 해주시는지를 열심히 홍보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장님 모두 정말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란, 특히 시민 삶을 바로 가까이에서 지키고 돕는 지방행정은, ‘공기’

이면서 동시에, ‘물’과 같다고도 느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흐른다는 것이, ‘물’의 본질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제가 느낀 한 가지 아쉬운 부분. 바로, 각 부서 사이의 칸막이가 생각보다도 좀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행정 업무 효율을 위한 부서별 업무 구분과 분장은 꼭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 부서 간의 상부상조, 바로 소통과 협력입니다. 행정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우리 시청의 모든 부서는 제각기 떨어져서 혼자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각 부서 행정이 서로 어울리고 협력할 때, 동두천시 행정이 멋지게 완성되어 시민 행복이라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 극히 일부에 남아있을,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부서 간 소통과 연락 부족, 부서 이기주의의 잔재를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공무원은 계속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입장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내일은 저쪽 부서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 부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 돈독하게 한다면, 그 좋은 영향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나아가 우리 동두천시민의 행복으로 꽃 피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은,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 결국 공직자 자신은 물론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모든 공직자분. 지금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 부분들은 제가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의 터널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부디 별 피해 없이 안전하게 여름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 모두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6. 21.(수)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21회 정례회 —



권영기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권영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약 42%가 주한미군 공여지입니다. 전국 미군 공여지 비율 1위로 현재는 26%가 반환되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형으로 반환되었고 정작 개발이 기대되고 활용 가치가 큰 케이시 및 호비와 같은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두천시에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써 입는 지역정

제 손실액은 연평균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짐볼스 훈련장 부지는 2005년 9월 반환된 후 골프장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두천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은 버텨낼 힘조차 없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미군 감소 및 기지반환 지연으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인구 역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추진 중이지만, 많은 우여곡절과 긴 인내 끝에 1단계 사업은 작년에 겨우 착공했고, 2단계 사업은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먹거리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다 같이 지금부터 행동해봅시다! 첨단방위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냅시다!

최근 김성원 국회의원과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동두천시가

원팀이 돼서 동두천시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첨단방위산업 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국가산업단지 2단계에 첨단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첫째, 동두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방 AI센터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방 AI센터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하고 본격적인 체도에 올랐습니다. 현재 첨단방위산업은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대전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동두천시의 간 절함과

절실함을 내세워서라도 국방 AI센터를 반드시 유치해내야만 합니다. 국방 AI센터가 유치되면 국가산업단지 2단계의 첨단방위산업특화단지 추진도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국방부는 국방AI센터라는 목적상 첨단과학기술자들을 모셔야 하니 아무래도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서울 유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학도시 대전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민의 논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왜 국방AI센터가 서울, 대전보다 동두천에 적합하고 유리한지 논리를 만들고 환경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동두천에 유치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미국과의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차세대 핵심 및 신흥 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 성명 등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대표도시로서 6.25 전쟁 이후 미군과 함께

70년간 안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70년간 희생만 강요당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동두천시는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나아갈 비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한미 동맹의 의미를 강력히 어필하여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방 AI센터와 한미국방과학센터 유치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첨단방위산업 산(産),학(學),연(研) 공동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동양대학교와 신한대학교라는 4년제 종합대학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즉시 대학교 측과 연계해서 방위산업 관련 학과 또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정부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경남 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대전, 2023년에는 경북 구미가 선

정되었습니다. 향후 3곳의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신규로 더 지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3곳 중에 우리 동두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대표적인 군사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육군뿐만 아니라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관(官), 산(産), 학(學), 연(研)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첨단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춰놓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동두천이 첨단방위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이 되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및 조직개편(2023. 1. 1.)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 개정·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 등(안 제1조~제7조, 제9조)
- 나. 조직개편(2023. 1. 1.)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안 제7조, 제8조)
- 다. 단순 오탈자 등 변경(안 제2조, 제9조~제11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로 한다.

제3조(「동두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5조(「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동두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7조제2항”을 “규칙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5조”를 “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동두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정보화부서”를 각각 “관리부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화부서”를 각각 “관리부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정보화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자민원창구 또는 「전자정부법」 제9조”를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부서”를 각각 “관리부서”로 한다.

제8조(「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보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한다.

별표 3의 “공보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한다.

별표 5의 가호 여름철 및 나호 겨울철 긴급 통신지원 담당부서의 “공보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재난수습 홍보 담당부서의 “공보전산과”를 “홍보미래전략담당관”으로 자원봉사 관리 담당부서의 “복지정책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의 긴급통신 지원기능 담당부서의 “공보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제10호의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담당부서의 “복지정책과”를 “자치행정과”로, 제12호의 재난수습 홍보 기능 담당부서의 “공보전산과”를 “홍보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동두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중 “소셜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소셜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동두천시 표창 조례」”를 “「동두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제11조(「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6조제3항----- ----- ----- -----.

제2조(「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② (생략)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 <u>산업안전보건법</u> 」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산업안전보건법</u> 」 제122조-----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동두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 -----. 2.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 -----.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법 제3조 제1항----- ----- ----- ----- -----

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훈련) ① (생 략)	제11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한국 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 ----- ----- -----.

제4조(「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 ----- ----- -----.

제5조(「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u>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u> 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 --- <u>법 제31조제1항</u> ----- ----- ----- ----- ----- ----- -----.

제6조(「동두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시행규칙</u> ----- ----- -----.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u>제5조</u>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u>제10조</u>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u>규칙 제17조제2항</u>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u>규칙 제26조제3항</u> ----- -----

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
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5조(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규칙 제5조
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
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 규칙 제10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동두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 <u>정보화부서</u> ”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 ----- ----- ----- <u>관리부서</u> ----- ----- ----- -----.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u>정보화부서</u> 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 ----- <u>관리부서</u>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u>정보화부서</u> 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u>관리부서</u> -----

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등 운영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

-----.

② 관리부서-----

-----.

-----.

1. ~ 8. (생략)

제8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관, 과, 소, 원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이하“전자민원실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실 등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0조(시스템 보안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8조(사전협의 및 점검) -----

관리부서-----

-----.

제10조(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

① -----

전자민원창구-----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시스템 보안대책) ① 관리

부서-----

-----.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과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

제8조(「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table><tr><th>재난관리 주관기관</th><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th>주관부 서(현재)</th></tr><tr><td>미래창조과학부</td><td>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td><td>공보처와 " "</td></tr><tr><td></td><td>(생략)</td><td></td></tr></table>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2. 비상2단계 : 호우·대설경보 또는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가. 실무반 편성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 서(현재)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	공보처와 " "		(생략)		별표 1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table><tr><th>재난관리 주관기관</th><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th>주관부 서(현재)</th></tr><tr><td>미래창조과학부</td><td>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td><td>정보통신과 " "</td></tr><tr><td></td><td>(현행과 같음)</td><td></td></tr></table>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2. 비상2단계 : 호우·대설경보 또는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가. 실무반 편성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 서(현재)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 "		(현행과 같음)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 서(현재)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	공보처와 " "																	
	(생략)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 서(현재)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 "																	
	(현행과 같음)																		

통 제 관	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	총 $6+\alpha+\beta+\gamma$ 명	
상황관리	반 장(1)	담당관
총괄반 ($6+\alpha$ 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	비상1단계 근무자(α) + (β), 자치행정과(β), 복지정책과(β), 사회복지과(β), 환경보호과(β), <u>공보전산과</u> (β), 문화체육과(β), 농업축산위생과(β), 도시재생과(β), 건축과(β), 환경사업소(β), 보건소(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χ), 육군제28보병사단 한국가스안전공사(χ), 한국전력공사(χ), 한국전기안전공사(χ), KT(χ), 동두천양주교육청(χ), 자율방재단(χ), 동두천경찰서(χ), 동두천소방서(χ)	

(생 략)

통 제 관	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	총 $6+\alpha+\beta+\gamma$ 명	
상황관리	반 장(1)	담당관
총괄반 ($6+\alpha$ 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	비상1단계 근무자(α) + (β), 자치행정과(β), 복지정책과(β), 사회복지과(β), 환경보호과(β), 정보통신과(β), 문화체육과(β), 농업축산위생과(β), 도시재생과(β), 건축과(β), 환경사업소(β), 보건소(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χ), 육군제28보병사단 한국가스안전공사(χ), 한국전력공사(χ), 한국전기안전공사(χ), KT(χ), 동두천양주교육청(χ), 자율방재단(χ), 동두천경찰서(χ), 동두천소방서(χ)	

(현 행 과 같 음)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여름철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	본부장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 리 총 괄	안전총 괄과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 관리(즉시 보고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 ※ 13개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대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대 관리 ◦ 하천 수위 모니터링 및 피해 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대장 작성 및 복무단속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및 보고회 준비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② 긴급생 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대한적십자사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 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 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 생계 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등
③ 재난현 장 환경정 비	환경보 호과	◦ 쓰레기 수거·처리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지도·확인
④ 긴급 통신지 원	공보전 산과 KT	◦ 통신 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 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설 응급복 구	일자리 경제과, 공원녹지 과, 건축 과, 도로 과, 교통 행정과, 환경사업 소, 한국전 력공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 저수지 방류량 조절 및 홍수 재해 대응 협의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여름철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	본부장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 리 총 괄	안전총 괄과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 관리(즉시 보고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 ※ 13개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대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대 관리 ◦ 하천 수위 모니터링 및 피해 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대장 작성 및 복무단속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및 보고회 준비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② 긴급생 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대한적십자사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 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 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 생계 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등
③ 재난현 장 환경정 비	환경보 호과	◦ 쓰레기 수거·처리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지도·확인
④ 긴급 통신지 원	정보통신과 KT	◦ 통신 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 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설 응급복 구	일자리 경제과, 공 원녹지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 과, 환경 사업소, 한국전 력공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 저수지 방류량 조절 및 홍수 재해 대응 협의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⑥ 에너지 기능복구	인자리경제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바자재 등 지원
⑦ 재난수습 홍보	<u>공보전신과</u>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 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 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시 교육청)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등
⑧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안전총괄과, 도로과, 육군제28보병사단, 자율방재단	- 종합적인 재난 물자 계획 관리 및 적정 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	교통행정과	- 교통통제 상황 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풍수해 우려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 교통흐름 상황 관리, 중차, 연장 운행 및 우회 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 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리	<u>복지정책과</u> 안전총괄과	- 재난 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 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지	동두천경찰서	- 재난 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 지역 파악 - 재난 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 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 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색 구조·구급	동두천소방서	- 재난 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⑥ 에너지 기능복구	인자리경제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바자재 등 지원
⑦ 재난수습 홍보	<u>홍보미래전략담당관</u>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 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 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시 교육청)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등
⑧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안전총괄과, 도로과, 육군제28보병사단, 자율방재단	- 종합적인 재난 물자 계획 관리 및 적정 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	교통행정과	- 교통통제 상황 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풍수해 우려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 교통흐름 상황 관리, 중차, 연장 운행 및 우회 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 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리	<u>자치행정과</u> 안전총괄과	- 재난 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 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지	동두천경찰서	- 재난 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 지역 파악 - 재난 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 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 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색 구조·구급	동두천소방서	- 재난 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나. 겨울철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리 총괄	안전총 괄과, 도로과, 교통행 정과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 대책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 관리(즉시 보고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 기능 소관부서별 관련 분야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도로 제설 추진 상황 파악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시방·실종자유족 대책 - 상황근무자 식사·아식 등 후생·복지 및 복무 단속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견업무 수행 및 보고회 준비
② 긴급생활 안전지원	복지정 책과, 사회복 지와, 대한적 십자사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 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시방·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 생계구조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등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보 호과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하장 설치 운영 지도확인
④ 긴급통신 지원	공보전 신과 KT	- 통신 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 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설 응급복구	일자리경제 과, 도로과, 공 원녹지과, 건축과, 환 경 사업소, 한 국전력공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진행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추진을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⑥ 에너지 가능복구	일자리경제 과 한국전 기안전공사 한국가 스안전공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나. 겨울철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리 총괄	안전총 괄과, 도로과, 교통행 정과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 대책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 관리(즉시 보고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 기능 소관부서별 관련 분야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도로 제설 추진 상황 파악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시방·실종자유족 대책 - 상황근무자 식사·아식 등 후생·복지 및 복무 단속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견업무 수행 및 보고회 준비
② 긴급생활 안전지원	복지정 책과, 사회복 지와, 대한적 십자사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 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시방·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 생계구조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등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보 호과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하장 설치 운영 지도확인
④ 긴급통신 지원	공보전 신과 KT	- 통신 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 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설 응급복구	일자리경제 과, 도로과, 공 원녹지과, 건축과, 환 경 사업소, 한 국전력공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진행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추진을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⑥ 에너지 가능복구	일자리경제 과 한국전 기안전공사 한국가 스안전공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⑦ 재난수습 홍보	관보 전파 방송통신위원회 (학교)	- 대설·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 보고 전파(출판·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지막 방송, 지역 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시 교육청) 학생안전 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등
⑧ 물자 관리 및 지원 지원	안전총괄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단 지원지원	- 종합적인 재난 물자 계획 관리 및 적정 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 보유 및 잉여자재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	교통행정과	- 교통통제 상황 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교통흐름 상황 관리, 중지, 연장운행 및 우회 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 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리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 재난 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등 급복구 등 대인 지원활동 추진 - 설해 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지	동두천경찰서	- 재난 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 지역 파악 - 재난 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 운행 통제 실시 - 주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 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복 구조·구급	동두천소방서	- 재난 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⑦ 재난수습 홍보	홍보 민간 전파 방송통신위원회 (학교)	- 대설·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 보고 전파(출판·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지막 방송, 지역 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시 교육청) 학생안전 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등
⑧ 물자 관리 및 지원 지원	안전총괄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단 지원지원	- 종합적인 재난 물자 계획 관리 및 적정 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 보유 및 잉여자재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	교통행정과	- 교통통제 상황 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교통흐름 상황 관리, 중지, 연장운행 및 우회 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 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리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 재난 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등 급복구 등 대인 지원활동 추진 - 설해 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지	동두천경찰서	- 재난 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 지역 파악 - 재난 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 운행 통제 실시 - 주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 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복 구조·구급	동두천소방서	- 재난 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제1
항제2호 관련)

기능유 역	담당 조직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상황 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 관리 담당관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신원확인·통화·추적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분석·판단 · 관계 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화재 상황 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정보·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상황보고서 작성관	· 일일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행정 지원 담당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 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송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사무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현업 기능	복합적 재난 사태 대응 심지사	2. 긴급생 존지원 기능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긴급생활·의료 및 사생재난 피해 지원 대책 검토 · 집단 지역 제재, 금융, 전기통신료, 보행료 등 감면 · 피해 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 피해 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 신지원 기능	· 통신시설 피해 상황 파악 보고 · 통신망 복구 지원 · 통신망 복구 지원 · 통신망 복구 지원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 정리 기능	· 피해 시설 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지원 기능	· 국민 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상황 파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6. 재난관 리지원 기능	· 재난관리지원 투입 실태 및 소요지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지원 동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 응 기능	· 교통통제 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 통행 재개 및 조속대응 지원
		8. 의료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 소 등) · 재난 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 황 정보기능	· 재난현황 환경오염 피해 상황 파악 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 지원 기능	· 재난 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급 파악 및 지원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사회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 예방 사전조치
		12. 재난 수습 기능	· 재난수습 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방·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스팸 등의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확성안전 관리 대책 추진 등
		13. 재난 수습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원 · 구급대의 구조·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사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 ·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 업무 등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제1
항제2호 관련)

기능유역	담당부서 및 직급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상황 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 관리 1. 재난상 황관리 기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관리대의 구축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 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화재 상황 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상황보고서 작성관	• 일일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행정 지원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 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송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대통령령·특별지시사항 처리
현업 기능	복합적 재난 사태 대응 심지사 대행 심지사	2. 긴급생 존지원 기능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긴급생활·의료 및 사생재난 피해 지원 대책 검토 - 집단 지역 제재, 금융, 전기통신료, 보행료 등 감면 • 피해 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 피해 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 신지원 기능	• 통신시설 피해 상황 파악 보고 • 통신망 복구 지원 • 통신망 복구 지원 • 통신망 복구 지원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 정리 기능	• 피해 시설 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지원 기능	• 국민 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상황 파 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6. 재난관 리지원 기능	• 재난관리지원 투입 실태 및 소요지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지원 동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 응 기능	• 교통통제 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 통행 재개 및 조속대응 지원
		8. 의료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 소 등) • 재난 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 황 기능	• 재난현황 환경오염 피해 상황 파악 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 지원 기능	• 재난 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급 파악 및 지원 • 재난 지역 긴급 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사회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 예방 사전조치
		12. 재난 수습 기능	• 재난수습 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방·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스팸 등의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확산방지 관리 대책 추진 등
		13. 재난 수습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구급대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인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 업무 등

제9조(「동두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소셜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 변동 등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u>소셜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u> 5. ~ 10.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u>소셜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 -----. 5.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지원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u>「동두천시 표창 조례」</u> 에서 정하는 바에	제23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동두천시 포상 조례」</u> -----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 ① (생략)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민원업무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1조(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2. (생략)	-----.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	1. 2. (현행과 같음)
	3. -----

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
 동차를 말한다.

4. (생 략)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3. (생 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4. (현행과 같음)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14조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16. (생략)	제3조(정의) ----- -----. 1.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 16.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제6조(허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8호, 2023. 3. 28., 일부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5조의3 삭제 <2015. 12. 1.>

도로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020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27조의2 삭제 <2011. 11.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0.]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전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0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吐出管)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흘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먹는물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資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유가증권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3.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에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영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5년의 예치기간 경과 후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고, 보증서·유가증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그 보증서·유가증권으로 반환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정부법 총괄) 044-205-2710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제10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디지털자원정책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제36조~제43조 및 제44조)) 044-205-283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관련(제43조의2)) 044-205-2812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 - 국가기준데이터 관련(제44조의2~제44조의3)) 044-205-2488
행정안전부(디지털자원정책과 - 정보자원 통합 관련(제54조~제54조의2)) 044-205-2828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정책과 - 감리 관련(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의2,3)) 044-205-2723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관련(제29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련(제34조)) 044-205-2748

제9조 삭제 <2022. 1.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44-205-2455, 2444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정보 공동이용) 044-205-2813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전자증명서의 발급) 044-205-2816

제45조 삭제 <2022. 1. 11.>

붙임 2

현행조례발췌서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정) 2015.12.31 조례 제1825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60-2328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1.31]

(일부개정) 2017.01.31 조례 제1917호 (인용조문과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244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및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시행 2017.01.31]

(일부개정) 2017.01.31 조례 제1917호 (인용조문과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보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24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31.>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동두천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31.>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제3조(적용범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30.>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개정 2015. 10. 30.>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2017. 1.31.>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5. 10. 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5. 10. 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15. 10. 30.>

4.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 10. 30.>

제1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1644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423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806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434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시장은법 제31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 2016.12.30]

(전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914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3195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출수 장치 및 수위측정관
2. 내부 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위측정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규칙 제17조제2항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두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2018.02.05 조례 제1984호 타)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627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실 운영
4.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7. 1.31.>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시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등 운영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

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3.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실명으로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게시한 내용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주2회 이상 게시한 똑같은 내용 및 1일 2회이상 게시한 비슷한 내용
8.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7. 1.31.>

제8조(사전협의 및 점검)① 담당관, 과, 소, 원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7. 1.31.,2018.2.5.>

제10조(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이하“전자민원실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실 등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② 전자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7. 1.3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④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시스템 보안대책)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과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2018.02.05 조례 제1984호 타)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628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소셜채널”이라 함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소셜ID”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 소셜채널 안에서 특정 이용자와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 변동 등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셜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셜민원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이 주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 “행정콘텐츠”라 함은 공공정보·행정정보 및 각종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콘텐츠의 형태로 가공·편집하여 소셜미디어로 배포한 것을 말한다.
8. “소셜기자”라 함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9. “소셜댓글”이라 함은 소셜ID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 함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를 말한다.

제23조(지원 등)① 시장은 소셜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① 민원인은 소셜ID를 이용하여 시가 운영하는 소셜채널에 소셜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셜댓글과 같이 민원인의 소셜ID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경우 블로그나 다른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소셜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민원업무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시행 2011.09.09]

(일부개정) 2011.09.09 조례 제1579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2299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1.9.9]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1. 9. 9>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

[신설 2011.9.9.]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319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휴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60-3258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놀이숲”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조성된 놀이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동두천 유아숲체험원”과 “소요산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1.>
4. “소요 별&숲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동두천 나눔목공소”와 “동두천 상상공작소”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5. 17.>
6. “동두천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1. 10. 18.>
7.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전일을 말한다.<개정 2021. 5. 17.>
10.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1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4.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6. "참가료"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및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1. 5. 17.>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용어 통일(향토예비군→예비군)(안 제2조)

나. 의장 직무대행 규정 개정

- 의장(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 또는 당연직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3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또는 당연직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제11호”를 “제3조제3항제1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생 략) 2. 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 대책 가. (생 략) 나. <u>향토예비군 · 민방위대</u>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 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 보 ·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 라. (생 략) 3. ~ 5. (생 략)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u>예비군 · 민방위대</u> ----- ----- ----- 다. · 라.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협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1인의 부의장을 두되 부의장은 위원중 에서 <u>호선</u> 하고,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제3조(협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호선(互選)</u> 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또는

대행한다.

③ (생 략)

제4조(협의회 위원 임기) ① 제
3조제3항제11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당연직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 위원 임기) ① 제
3조제3항제12호-----

-----.

② (현행과 같음)

통합방위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68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10.] (일부개정) 2022.05.10 조례 제22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동두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7.>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10. 5. 17.]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 16.>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1인의 부의장을 두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
2. 관할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 <2022. 5. 10.>
4. 의정부지방검찰청 지검장 또는 검사 <신설 2006. 5. 13.>

5.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06. 5. 13.>
6. 관할지역 경찰서장 <개정 2006. 5. 13., 2009. 10. 20.>
7. 관할지역 보훈지청장 <신설 2015. 5. 8.>
8. 관할지역 교육장 <개정 2006. 5. 13., 2009. 10. 20.>
9.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개정 2006. 5. 13.>
10. 관할지역 소방서장 <신설 2010. 5. 17.>
11. 관할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 5. 17.>
12.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0. 5. 17.>

제4조(협의회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1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의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 10. 20.>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99.10.11, 2002.12.23, 2005.4.13., 2009.8.17. >
 3. 작전담당간사 : 관할지역 사단의 대대급 이상 군부대 작전참모 또는 작전장교 <개정 2002. 12. 23., 2006. 5. 13.>
 4. 예비군담당 간사 : 관할지역 예비군관리대대의 부대장 또는 작전장교 <신설 2006. 5. 13.>
 5. 경찰담당 간사 : 관할지역 경찰서의 작전 및 운용업무 담당과장 <신설 2008. 6. 16.> <개정 2009. 10. 20.>
- ② 협의회의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담당간사
 -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 나.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주관
 - 다. 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
 -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 <개정 2006. 5. 13.>
 - 마.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개정 2006. 5. 13.>
2. 민방위담당간사
 - 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조정
 - 나.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개정 2006. 5. 13.>
3. 작전담당 간사
 - 가. 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전 상정
 -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 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 [전문개정 2006. 5. 13.]

4. 예비군담당 간사 <신설 2006. 5. 13.>

-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5. 경찰담당 간사 <신설 2008. 6. 16.>

-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 나. 경찰정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제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06. 5. 13.>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시와 동에 구성 운영하며 시 지원본부의 본 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시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동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자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개정 2008. 6. 16., 2009. 10. 20., 2010. 5. 17., 2015. 5. 2.>

③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홍보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 5. 13., 2008. 6. 16., 2015. 5. 8.>

④ 법 제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지원본부내에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관할 군부대 관계참모(장교) 또는 관할지역 경찰서의 과장급으로 한다. <신설 2006. 5. 13.> <개정 2009. 10. 20., 2010. 5. 17.>

⑤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하되, 동 지원반은 반으로 편성된 공무원 중 1명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 5. 13.>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직업 재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위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라.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직원 및 급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10조)
- 바.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자.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16조)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상패로 64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작업장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작업장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장 위탁계약의 경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9조(직원)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의 시설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의 책임자는 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급여) 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

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책임과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동두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작업장 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

탁자에 대하여 작업장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동두천시에 귀속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 운영(갱신)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소재지	
	설 립 일 자		전화번호	
	대 표 자명		생 년 월 일	
	설 립 목 적			
	법 인 사 업			
신 청 사 항	운 영 목 적			
	운 영 (갱 신) 기 간	~		
	주요 사업내용			
법 인 현 황	자 산 현 황			
	직 원 현 황			
	사 업 실 적			
연 예 산 액 (백 만 원)	계	운영주체 부담금	보 조 금	기 타
주 사 업 계 획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서

□ 시설의 표시

○ 명 칭 :

○ 위 치 :

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을 “시장”이라 하고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을 위·수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기간) 위·수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은 보호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은 “시장”이 “○○○”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③ “○○○”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 “○○○”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인적사고 및 수탁재산 손실 등(화재 및 망실 우려가 있는 물건포함)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시장”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보호작업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은 자부담으로 피해당사자 또는 “시장”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시장”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④ “○○○”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 “○○○”은 “시장”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이 보호작업장을 수탁 운영하면서 “○○○”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 “○○○”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은 보호작업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3. 작업일지
4. 종사자 인사기록서류
5. 임금대장
6.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기록부

7. 자재(원료) 수불부
8. 자재(원료) 구매대장
9. 비품(장비) 관리대장
10.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서류 및 장부
11. 보고서철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12. 자체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13.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지시된 서류와 장부

제6조(증가재산의 처리) 위탁기간 동안 “시장”의 지원금 및 “○○○”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시장에게 귀속된다.

제7조(상호 협력) 위탁기간 동안 “시장”의 노력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은 협약사항에 기초해 사업을 착수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장애인교육,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고용계획, 생산품목, 사업경영,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당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② “○○○”은 매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방침) ① “○○○”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 복지사업 공통지침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에 의거 운영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고용증대 및 자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퇴직시 본인의 퇴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작업장 임원(시설장 등) 교체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동두천시(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⑤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유상적 임금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승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적자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6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약정할 수 있다.

20

위탁자(시장)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생연동 438번지)

동 두 천 시 장(인)

수탁자(○○○) :

(인)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2. 1. 26.]

부칙 <제18618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부칙 <제889호, 2022.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함
○ 2023년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

(단위: 천원)

구분	계	도비(10%)	시비(90%)
계	468,823	46,882	421,941
인건비	405,056	40,505	364,551
운영비	63,767	6,377	57,39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도비	46,882	49,226	51,687	54,271	56,984	259,050
	소계(a)	46,882	49,226	51,687	54,271	56,984	259,050
세출	일반회계	468,823	492,264	516,877	543,720	570,905	2,592,589
	특별회계	-	-	-	-	-	-
	소계(b)	468,823	492,264	516,877	543,720	570,905	2,592,589
□ 총 비용		421,941	443,038	465,190	489,449	513,921	2,333,539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예산편성(시도비)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도 비		46,882	49,226	51,687	54,271	56,984	259,050
시 비	소 계	421,941	443,038	465,190	489,449	513,921	2,333,539
	일반회계	421,941	443,038	465,190	489,449	513,921	2,333,539
	특별회계	-	-	-	-	-	-
합계		468,823	492,264	516,877	543,720	570,905	2,592,589

5. 작성자(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5. .

제출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내용

1)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원)

구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732,666,561,600	652,734,286,500	69,447,984,580	10,484,290,520
세입 ^㉔	732,235,820,194	652,798,468,810	68,906,501,044	10,530,850,340
세출 ^㉕	640,452,610,820	564,861,566,940	66,616,077,580	8,974,966,300
결산상잉여금 ^㉕ = ^㉔ - ^㉕	91,783,209,374	87,936,901,870	2,290,423,464	1,555,884,040
명시이월액 ^㉖	10,363,234,870	9,430,848,160	286,197,710	646,189,000
사고이월액 ^㉗	21,000,000	21,000,000	0	0
계속비이월액 ^㉘	60,952,109,450	58,624,592,700	1,657,799,030	669,717,720
보조금실제반납금 ^㉙	7,214,234,970	7,210,394,680	3,248,220	592,070
순세계잉여금 ^㉖ = ^㉕ - ^㉖ - ^㉗ - ^㉘ - ^㉙	13,232,630,084	12,650,066,330	343,178,504	239,385,250

2) 예비비 지출

(단 위:원)

구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합 계	1건	16,713,000	16,700,580	0	12,420
일반회계	1건	16,713,000	16,700,580	0	12,420
특별회계	0건	0	0	0	0

3) 기금결산

(단 위: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70,087,736,717	103,552,657,772	127,447,752,482	23,895,094,710	273,640,394,489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4,498,384,830	13,599,826,500	35,787,217,050	22,187,390,550	58,098,211,33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0,671,362,040	85,998,813,560	85,998,813,560	0	186,670,175,600
사회복지기금	3,332,090,056	△26,964,538	38,919,822	65,884,360	3,305,125,518
신청사건립기금	6,334,115,000	3,898,057,210	3,898,057,210	0	10,232,172,210
체육진흥기금	1,086,470,560	△1,086,470,560	24,076,080	1,110,546,640	0
식품진흥기금	142,181,707	△126,040	22,206,760	22,332,800	142,055,667
재난관리기금	2,342,352,590	667,772,850	923,460,420	255,687,570	3,010,125,440
옥외광고 발전기금	122,631,920	△9,510,490	87,580,950	97,091,440	113,121,430
애향장학기금	11,558,148,014	511,259,280	667,420,630	156,161,350	12,069,407,294

4) 채권현재액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발생액 (나)	당해연도 소멸액 (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라) = (가) + (나) - (다)	비 고
계	2,528,501,210	806,970	285,780,760	2,243,527,420	
일 반 회 계	2,259,188,000	0	278,330,000	1,980,858,000	
공기업특별회계	1,221,200	0	0	1,221,200	
기 타 특 별 회 계	268,092,010	806,970	7,450,760	261,448,220	

5) 채무결산액

- 2022년도 채무 0원(2021년 채무 0원)

6)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원)

자산(A)	부채(B)	순자산(A-B)
2,480,167,300,992	41,527,507,633	2,438,639,793,359

- 자산내역

(단위: 원)

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2,480,167,300,992	372,022,924,916	5,878,495,578	115,917,546,225	402,185,723,298	1,582,422,899,367	1,739,711,608

- 부채내역

(단위: 원)

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41,527,507,633	9,356,953,000	-	32,170,554,633

나) 재정운영

(단 위:원)

수익(A)	비용(B)	운영차액(A-B)
589,532,166,086	439,826,362,064	149,705,804,022

- 수익내역

(단 위:원)

계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589,532,166,086	109,262,036,353	478,084,163,600	2,185,966,133

- 비용내역

(단 위:원)

계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 비용	민간등이전 비용	기타비용
439,826,362,064	68,816,751,638	102,567,894,193	17,732,294,760	216,192,698,560	34,516,722,913

7) 성과보고서(성과지표 달성현황)

(단 위:건)

실국명	전략목 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69	176	13	113	50
의회사무과	1	1	3	0	3	0
기획감사담당관	1	1	3	0	2	1
자치행정국	1	19	57	1	39	17
경제문화국	1	20	52	4	28	20
안전도시국	1	18	40	3	32	5
직 속 기 관	1	3	8	0	4	4
사 업 소	1	7	13	5	5	3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	면적	가격	증			감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계	660,532	5,861,537.21	1,709,023,100,488	513	93,170.55	57,158,724,753	118	11,998.14	71,775,410,230	660,927	5,942,708.62	1,694,406,415,011
행정 재산	636,916	5,036,545.72	1,517,086,804,565	466	92,188.55	43,580,706,565	25	6,960.95	5,352,257,639	637,357	5,121,773.32	1,555,315,253,491
일반 재산	13,539	824,991.49	40,446,896,853	11	982.00	401,791,328	15	5,038.19	2,098,734,761	13,535	820,935.30	38,749,953,420
건설 중인 재산	77	-	151,489,399,070	36	-	13,176,226,860	78	-	64,324,417,830	35	-	100,341,208,100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800	8,307,103,000	55	549,501,000	14	99,870,000	841	8,756,734,000

10) 지역통합 재정통계

(단위:원)

구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D/C,%)
계(=a+b+c-A-B)	18/1	854,789,525,643	761,893,654,419	92,895,871,224	2,480,167,300,992	41,527,507,633	1.67 %
지방자치단체(a)	18/1	854,789,525,643	761,893,654,419	92,895,871,224	2,480,167,300,992	41,527,507,633	1.67 %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0.00 %
지방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0	0	0	0	0	0.00 %

3. 첨부서류

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별첨

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안) : 별첨

라. 관계법령발췌서 : 별지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3~61조) 044-205-3373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6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5. .

제출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현행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대상을 시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시 장애인 체육회로 개정
(안 제13조제1항제4호)

나. 현행 조례에 반다비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 1-3)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시 체육회”를 “시 체육회·시 장애인 체육회”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반다미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전용 및 연습)

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단위 : 원)

구분		기준	이용주체	사용료			이용기준	비고
				구분	평일	주말		
체육관	체육활동	-	개인	주간	1,000	1,500	2시간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야간	1,500	2,000		
	배드민턴 1면	단체	주간	10,000	12,000	2시간		
			야간	12,000	15,000			
	체육활동 외 행사	배드민턴 4면	단체	주간	100,000	150,000	4시간	
				야간	150,000	225,000		
체력단련실 (헬스장)		자유	개인	3,000			1일권	
		(1일 1회		30,000			1개월	
		제한)		80,000			3개월	
수중운동실		1회	개인	4,000			50분	

- 주) 1. 초·중·고교생·대학생 및 장애인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동두천시 관외 거주자 및 단체 내 관외 거주자가 50%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요금을 책정한다.
3. 사용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2시간 단위로 대관 요금을 추가 부과한다.
4. 초과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가산한다.

나. 다목적실·동아리실 이용요금

(단위 : 원)

시설명	최대정원 (명)	금액			
		평일		주말	
		기본 2시간	초과 시간당	기본 2시간	초과 시간당
다목적실	20	20,000	10,000	30,000	15,000
		10,000	5,000	20,000	10,000
동아리실 1	30	10,000	5,000	20,000	10,000
		5,000	3,000	10,000	5,000
동아리실 2	20	10,000	5,000	20,000	10,000
		5,000	3,000	10,000	5,000
다목적실· 동아리실 2	40	40,000	20,000	60,000	30,000
		20,000	10,000	40,000	20,000

주) 1. 장애인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이용요금으로 적용한다.
 3. 기본 이용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 선택 가능.

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단위	사용료	비 고
냉·난방	1시간	연료, 전기료	
		고시가	
행사용 의자·연대	1식	5,000	
음향기기 및 방송장비 사용	1식	5,000	
플래카드·현수막 게첨료	1건	5,000	플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 게첨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 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시 체육회</u> 및 시 생활체육협 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4. <u>시 체육회·시 장애인 체육회</u>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인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의무 소방원을 포함한다.
8. “어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20인 이상이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1.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 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12.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에서 건립한 환경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기간과 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 및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허가 시에는 체육시설의 시설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기타

② 초등학교 운동부는 환경사업소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운동장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도·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할 경우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9.

7. 1.>

구	분	3월 ~ 10월	11월 ~ 02월
주	간	06:00 ~ 19:00	07: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 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용사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자) ① 제2조의 “전용사용자”와 “사용자”는 지정한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용사용자와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전용사용료와 이용료의 납부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단서삭제 2012.11.14>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일반, 전용사용료로 제9조제1항을 적용하여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 5와 같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 ③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입장수입총액의 1할 (프로경기는 1.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
2.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3.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참가 전 훈련경기
4. 시 체육회 및 시 생활체육협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5.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관내 학교 경기 및 행사
6.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개정 2021. 4. 5.>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교, 대학, 실업,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월간, 연간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
10. 관내 13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훈련경기<신설 2020. 7. 1.>
11.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1. 7. 29.>
12.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제6호 및 제10호는 70% 감면,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는 50% 감면한다. <개정 2020. 7. 1., 2021. 7. 29.>

③ 환경기초시설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금)의 사용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주말(토·일·공휴일)사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 12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10]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1. 전용사용,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개정 2021. 4. 5.>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개정 2021. 4. 5.>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경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개정 2021. 4. 5.>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② 제1항의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수익 허가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5. ‘동두천시 문화의 날’ 참여자<신설 2019. 11. 25.>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체육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2014.11.10>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30.>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입장권은 체육시설 내에서 매표한다.

② 모든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면제)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 할 때에는 수수료는 면제 한다.

제25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홍보물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공연·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11.17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2.11.14 조례 제16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14.11.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5. 조례 제2099호>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두천시 문화의 날' 참여자

이하생략

부 칙<2019. 11. 25. 조례 제20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5.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9. 조례 제2208호>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

②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③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제6호 및 제10호는 70% 감면,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는 50% 감면한다.

④~⑤ 생략

[별표 1] <개정 2012. 11. 14.>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육경기외 행사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 경 기 장	육상장	주 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야 간	40,000	60,000	80,000	120,000		
	(트랙) 축구	주 간	50,000	70,000	60,000	80,000	2시간 기준임	
		야 간	65,000	95,000	75,000	100,000		
	잔디 구장							
보조경기장		주 간	30,000	50,000	30,000	50,000		
		야 간	45,000	75,000	45,000	75,000		
테니스장		주 간	10,000	20,000	－	－	1면 기준임	
		야 간	15,000	30,000	－	－		
풋살경기장		주 간	청소년	10,000	15,000	－	－	2시간 기준임
			일 반	30,000	40,000	－	－	
		야 간	청소년	20,000	25,000	－	－	
			일 반	50,000	60,000	－	－	

주) 1.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 외 행사시 사용료는 육상장과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을 동두천시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단, 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연천군민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3. 관외 단체는 관외 거주자가 50%이상인 때를 말한다.

[별표 1-1] <개정 2012. 11. 14.>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육경기외 행사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축구장	주 간		30,000	40,000	50,000	70,000	2시간 기준임
	야 간		40,000	60,000	70,000	80,000	부대시설(전기) 사용료별도
풋살경기장	주 간	청소년	10,000	15,000	—	—	2시간 기준임
		일 반	20,000	30,000	—	—	
	야 간	청소년	20,000	25,000	—	—	
		일 반	40,000	50,000	—	—	

주) 1. 축구경기장, 풋살경기장을 동두천시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단, 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연천군민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2. 관외 단체는 관외 거주자가 50%이상인 때를 말한다.

[별표 1-2] <신설 2019. 7. 1., 개정 2020. 7. 1., 2021.4.5.>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전용 및 연습)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행사 (시설별전체/ 4시간 기준)		비 고
		평 일	토·일 공휴일	평 일	토·일 공휴일	
실내 경기장	주 간	2,000	3,000	100,000	150,000	1.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2.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평 일 : 09:00 ~ 22:00 - 토·일 : 09:00 ~ 18:00
	야 간	3,000	4,500	150,000	225,000	
야구장	주 간	40,000	60,000	75,000	112,500	

주) 1. 동두천시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관외 단체는 관외 거주자가 50%이상 인 때를 말한다.

2. 사용시간이 사용구분별로 중복될 때에는 사용시간이 많은 단위로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야구장은 조명지원이 불가하므로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

4. 초과사용료는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모두 2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가산한다.

5. 토·일·공휴일 전용사용의 경우 행사진행 등의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실내경기장’이라 함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가능한 부분을 칭하며 사용료 부과는 배드민턴경기장 1면을 기준으로 종목당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한다.

7. 배드민턴장은 단체와 개인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2개면까지는 개인신청자를 우선한다.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단위	사용료	비 고
냉·난방	냉 방	1시간	연료, 전기료의	※ 플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 게첨가능
	난 방	1시간	고시가	
기타	행사용 의자·연대	1식	5,000	
	플래카드 게첨료	1건/15일이 내	5,000	

[별표 2] <개정 2012. 11. 14.>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주 경 기 장	육 상 장 (트 랙)	1인 1일당		500	400	단체는 동일 소속팀이 20인 이상일 때임
	축 구 잔디구장	1인 2시간당		2,000	1,000	
	보조경기장	1인 2시간당		1,000	500	
	테니스장	1인 2시간당		2,000	1,000	1면 기준임
인라인스 케이트장		1인	주	어린이	500	단체는 동일 소속팀이 20인 이상일 때임
				청소년	1,000	
			간	일 반	1,500	
			야	어린이	1,000	
		1일		청소년	1,500	
				일 반	2,000	
			간	청소년	-	
				일 반	-	
풋살경기장		1일	주	청소년	-	
			간	일 반	-	
		1시간	야 간	청소년	-	
				일 반	-	

주) 1. 주경기장의 육상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동두천시 관내 거주자가 사용 할

때에는 무료로 한다. 단, 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연천군민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을 동두천시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단, 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연천군민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3. 관외 단체는 관외 거주자가 50%이상인 때를 말한다.

[별표 2-1] <개정 2012. 11.14.>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축구장	1인 2시간당			2,000	1,000	단체는 동일 소속팀이 20인 이상일 때임
풋살경기장	1일 1시간	주 간	청소년	-	3,000	
			일 반	-	10,000	
		야 간	청소년	-	5,000	
			일 반	-	15,000	

주) 1. 축구경기장, 풋살경기장을 동두천시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단, 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연천군민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2. 관외 단체는 관외 거주자가 50%이상인 때를 말한다.

[별표 3]

상 업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영화등 촬영(CF 포함)	1일(1회)	50,000
에드벌론 등의 계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5,000
프로그램등 판매행위	판매부수×1부당 가격	판매금액의 20%
기타 물품판매 이익	(매출금액-원가)×수량	이익금의 20%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	1년간	300,000
	5일 이내	30,000
	1일초과	5,000

[별표 4]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 기	기본료(10,000)+실전기사용료	
음 향 시 설(1일)	20,000+마이크사용비(마이크 개당 3,000)	
식당,매점,사무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	

[별표 5]

방 송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 디 오	
		국내경기	국제경기	국내경기	국제경기
중계방송	체육경기 및 각종 대회	40,000	60,000	20,000	30,000
녹 화 및 녹음촬영	녹화 및 녹음	20,000	30,000	10,000	15,000
	경기 또는 행사촬영	40,000	60,000	20,000	30,000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1. 25.>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 경기장명 :						
2. 사용목적 :						
3.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4. 사용구분 :						
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구 분	시설명	수 량		구 분	시설명	수 량

6. 사 용 료 :

7. 관람권 발행 :

구 분	매 수	금액(1매당)		구 분	매 수	금액(1매당)
어 린 이				노 인		
청 소 년				특별초대권		
군 인				초 대 권		
일 반				예 매 처		

8. 준수사항	1. 시설물 등을 깨끗이 사용하며,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한다. 2. 행사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위반할 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한다.
---------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며,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_____

단체명 : _____ (연락처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 : 폐기물처리계획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함)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2. 사용허가의 경기장					
경 기 장 별	목 적	사 용 기 간		비 고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3. 사용허가의 부대시설					
시 설 명	수 량	시 설 명	수 량	시 설 명	수 량
4. 관람권 발행					
구 분	매 수	금 액 (1매당)	구 분	매 수	금 액 (1매당)
어 린 이			노 인		
청 소 년			특별초대권		
군 인			초 대 권		
일 반			예 매 처		
5. 사용료					
구 분	금액(기본액)		산 출 기 초		비 고
6. 사용허가조건					
가.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나. 각종 집회 등을 사용할 때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라. 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경기장 사용자측에서 행사종료 즉시 분류,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지 않을시 「동두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11. 14.>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 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변경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용 구 분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부대)시설명				
사 용 료				
관람권 발행				
동두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11. 14.>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법인 또는		전화번호	
	단체인 경우		생년월일	
	단체명과 그 대 표 자 명)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주 간			
	야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1.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측에서 책임진다. 2.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3. 시정시책과 운동장관리상 사용중단을 요구할시는 이에 응한다. 4. 수허가자는 사용목적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조치를 책임진다.			
동두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재수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비업소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안 제4조)
- 지원사업 (안 제5조)
- 재정지원 (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체서 : 불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제5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참고사항 : 불임

☐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정 현황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
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붙임 2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제정 현황

○ 자동차정비업계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 2022. 1. 12. 국회에서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개최
정비업계, 생존권 보장 위한 직업교육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책 마련 요청

○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현황

- 광역(11):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기초(1): 대구광역시달서구

- ※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2021. 9. 24. 제정
(입법예고 2021. 8. 26.)

- ※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9. 제정
(입법예고 2021. 8. 24.)

-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1. 제정

-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제정

- ※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 2. 제정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인범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발 의 자: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이유

-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두천시 제안제도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창안대회를 신설함 (안 제4조의2)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함 (안 제10조)
- 제안자에 대한 부상 금액을 대폭 상향함 (안 제23조)
- 제안 심사, 실시,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안 제23조의2)
- 그 밖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정비

☐ 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

☐ 참고사항 : 불임

○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제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 제안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창안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홈이”를 “홈결이”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심사·채택”을 “채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제10조제1항 중 “10명”을 “12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안분야 관련 업무 담당 국·소·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3.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4. 지역주민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제15조제1항 중 “운영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는”을 “심사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장은”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규정」”을 “· 「정부 표창 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월”을 “1개월”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1. 금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 상: 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 동 상: 6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포상 등) 시장은 매년도 말에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중 “장은”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소관부서장은d”를 “소관부서장은”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향상 :”을 “향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고 :”를 “제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거 :”를 “제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개선 :”을 각각 “개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동두천시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u> 」 제45조 및 「 <u>지방 공무원법</u> 」 제78조에 따라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 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행정절차 법</u> 」 제52조의2 및 「 <u>지방공무 원법</u> 」 제78조----- ----- -----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동두천 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 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이 동두천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 행정서비스 · 행정 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 다음 각 호	1. ----- ----- ----- ----- ----- -----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 마. (생략)

2. ~ 10. (생략)

<신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

--.

가.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제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 제안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창안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

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흔
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
 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
 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
의사항

6. (생 략)

③ (생 략)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 흔
결이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 ---- 채택 -----

2. ~ 4. (현행과 같음)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2명과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생략)

제1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 12
명 이상 15명 -----.

② -----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안분야 관련 업무 담당 국·소·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3.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4. 지역주민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운영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제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사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창안의 등급) ① (생략)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위원회-----

④ ----- 심사는 -----

-----.

제1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 장은 -----

-----.

제21조(창안의 등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 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한다.

③ (생 략)

제23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 상 : 100만원
2. 은 상 : 50만원
3. 동 상 : 30만원

② -----

----- · 「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부상금의 지급) ① -----

-----.

1. 금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 상: 150만원 이상 250만원

4. 장려상 : 20만원

② (생략)

③ 창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실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자가 동일인인 경우 부상금만 지급한다.

④·⑤ (생략)

<신설>

제27조(그 밖의 보상) 장은 창안

이하

3. 동 상: 6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현행과 같음)

③ ----- 1개

월 -----

----- 20만원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포상 등) 시장은 매년

도 말에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

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
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
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
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
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을 적용한다.

제3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창안을 통보받
은 소관부서장은 통보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창안실시계획
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주무

-----.

제2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
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소관부서장은 -----
--- 1개월 -----

-----.

-----.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생 략)

② 창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개선
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기여한 정도를 각 사항별 배
점기준에 따라 정하고, 규칙 제
10조에 따라 그 득점의 총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
여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
상 : 35점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
고 : 35점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
거 : 10점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 10
점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 10점

6.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향
상: ---

2. ----- 제
고: ---

3. ----- 제
거: ---

4. ----- 개선: ----
--

5. -----
개선: ----

6. (현행과 같음)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1.]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유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시장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8. “연구동아리제안”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제안을 말한다.

9.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내에 직장이 있는 사람, 시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2명과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제안제도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안제출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운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담당관, 과장, 소장, 원장이 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목적, 관계법령 등 관련사항 심의
 3. 그 밖에 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사는 서면으로 한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6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의 실시계획을 실시부서의 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경기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21조(창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2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실적가점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主)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 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다만, 부제안자에게는 가점의 1/2만 부여한다.)

제23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 상 : 100만원
2. 은 상 : 50만원
3. 동 상 : 30만원
4. 장려상 : 20만원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창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실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자가 동일인인 경우 부상금만 지급한다.

④ 부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⑤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동아리 여비 등 지급)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자에게는 연구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우수 연구 동아리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창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26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7조(그 밖의 보상) 장은 창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동두천시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9조(특허 등의 출원) 제2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한 시장은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3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소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31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기술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안주무부서장은 창안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실시성과의 평가실시) ① 창안의 실시주관부서장은 창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 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창안의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② 창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개선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각 사항별 배점기준에 따라 정하고, 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득점의 총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35점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 35점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 10점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 10점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 10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장 보 칙

제36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이은경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 이유

-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사업 (안 제4조 ~ 제5조)
- 재정지원 (안 제6조)
- 호스피스의 날 (안 제7조)
- 비밀 유지 의무 (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참고사항 : 붙임

-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조례 현황

동두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

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법 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
3. 법 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의 호스피스의 날 제정 취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2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4. 20.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16.3.22.	
2	가평군			
3	고양시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0.9.29.	호스피스의 날
4	과천시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17.6.13.	
5	광명시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2.8.2.	
6	광주시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19.7.12.	호스피스의 날
7	구리시	구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1.3.12.	
8	군포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1.1.15.	호스피스의 날
9	김포시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2.11.28.	
10	남양주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1.7.29.	
11	부천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1.10.5.	
12	성남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17.9.20.	
13	수원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0.10.5.	심의위원회, 호스피스의 날
14	시흥시			
15	안산시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1.4.21.	호스피스의 날
16	안성시			
17	안양시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17.11.16.	호스피스의 날
18	양주시			
19	양평군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1.11.10.	호스피스의 날
20	여주시			
21	연천군			
22	오산시			
23	용인시			
24	의왕시			
25	의정부시			
26	이천시			
27	파주시			
28	평택시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18.11.9.	
29	포천시			
30	하남시			
31	화성시	화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1.7.19.	장례문화지도자, 호스피스의 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5.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심의

제5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및 조직개편(2023. 1. 1.)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 개정·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 등(안 제1조~제7조, 제9조)
- 조직개편(2023. 1. 1.)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안 제7조, 제8조)
- 단순 오타 등 변경(안 제2조, 제9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용 조문 개정과 조직 개편 등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법체계와 정비 기준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5.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심의

제5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용어 통일(향토예비군→예비군)(안 제2조)
- 의장 직무대행 규정 개정
 - 의장(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 또는 당연직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상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5.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심의

제5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직업 재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위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직원 및 급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10조)
-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5.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심의

제5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현행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대상을 시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시 장애인 체육회로 개정(안 제13조제1항제4호)
- 현행 조례에 반다비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 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반다비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실별, 이용주체별, 시간대별로 적정한 이용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감면 규정은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등 다른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규정과는 상이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추후 국민체육센터와 시설사업소 등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4. 김재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심의

제5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비업소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안 제4조)
- 지원사업 (안 제5조)
- 재정지원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전기차 기술교육과 경영 진단, 정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 내 자동차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4. 박인범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심의

제5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두천시 제안제도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창안대회를 신설함 (안 제4조의2)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함 (안 제10조)
- 제안자에 대한 부상 금액을 대폭 상향함 (안 제23조)
- 제안 심사, 실시,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안 제23조의2)
- 그 밖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두천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창안대회 규정을 신설하고 부상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도입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4. 이은경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심의

제5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사업 (안 제4조~제5조)
- 재정지원 (안 제6조)
- 호스피스의 날 (안 제7조)
- 비밀 유지 의무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8.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차수 :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 답변

제2차 결산승인안 검토·심의

제4차 결산승인안 최종 심의 및 보고서 채택

제5차 본회의 최종 의결

라.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및 제150조(결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2022회계연도 예비비의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회부된 결산승인안

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내용

1)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732,666,561,600	652,734,286,500	69,447,984,580	10,484,290,520
세입㉔	732,235,820,194	652,798,468,810	68,906,501,044	10,530,850,340
세출㉕	640,452,610,820	564,861,566,940	66,616,077,580	8,974,966,300
결산상잉여금 ㉖=㉔-㉕	91,783,209,374	87,936,901,870	2,290,423,464	1,555,884,040
명시이월액㉗	10,363,234,870	9,430,848,160	286,197,710	646,189,000
사고이월액㉘	21,000,000	21,000,000	0	0
계속비이월액㉙	60,952,109,450	58,624,592,700	1,657,799,030	669,717,720
보조금실제반납금㉚	7,214,234,970	7,210,394,680	3,248,220	592,070
순세계잉여금 ㉛=㉖-㉗-㉘-㉙-㉚	13,232,630,084	12,650,066,330	343,178,504	239,385,250

2)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합계	1건	16,713,000	16,700,580	0	12,420
일반회계	1건	16,713,000	16,700,580	0	12,420
특별회계	0건	0	0	0	0

3) 기금결산

(단 위 : 원)

기금명 \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70,087,736,717	103,552,657,772	127,447,752,482	23,895,094,710	273,640,394,489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4,498,384,830	13,599,826,500	35,787,217,050	22,187,390,550	58,098,211,33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0,671,362,040	85,998,813,560	85,998,813,560	0	186,670,175,600
사회복지기금	3,332,090,056	△26,964,538	38,919,822	65,884,360	3,305,125,518
신청사건립기금	6,334,115,000	3,898,057,210	3,898,057,210	0	10,232,172,210
체육진흥기금	1,086,470,560	△1,086,470,560	24,076,080	1,110,546,640	0
식품진흥기금	142,181,707	△126,040	22,206,760	22,332,800	142,055,667
재난관리기금	2,342,352,590	667,772,850	923,460,420	255,687,570	3,010,125,440
옥외광고 발전기금	122,631,920	△9,510,490	87,580,950	97,091,440	113,121,430
애향장학기금	11,558,148,014	511,259,280	667,420,630	156,161,350	12,069,407,294

4) 채권현재액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발생액 (나)	당해연도 소멸액 (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라) = (가) + (나) - (다)	비고
계	2,528,501,210	806,970	285,780,760	2,243,527,420	
일반회계	2,259,188,000	0	278,330,000	1,980,858,000	
공기업특별회계	1,221,200	0	0	1,221,200	
기타특별회계	268,092,010	806,970	7,450,760	261,448,220	

5) 채무결산액

- 2022년도 채무 0원(2021년 채무 0원)

6)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원)

자산(A)	부채(B)	순자산(A-B)
2,480,167,300,992	41,527,507,633	2,438,639,793,359

- 자산내역

(단위: 원)

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2,480,167,300,992	372,022,924,916	5,878,495,578	115,917,546,225	402,185,723,298	1,582,422,899,367	1,739,711,608

- 부채내역

(단위: 원)

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41,527,507,633	9,356,953,000	-	32,170,554,633

나) 재정운영

(단위: 원)

수익(A)	비용(B)	운영차액(A-B)
589,532,166,086	439,826,362,064	149,705,804,022

- 수익내역

(단위: 원)

계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589,532,166,086	109,262,036,353	478,084,163,600	2,185,966,133

- 비용내역

(단위: 원)

계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439,826,362,064	68,816,751,638	102,567,894,193	17,732,294,760	216,192,698,560	34,516,722,913

7) 성과보고서(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건)

실국명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69	176	13	113	50
의회사무과	1	1	3	0	3	0
기획감사담당관	1	1	3	0	2	1
자치행정국	1	19	57	1	39	17
경제문화국	1	20	52	4	28	20
안전도시국	1	18	40	3	32	5
직 속 기 관	1	3	8	0	4	4
사 업 소	1	7	13	5	5	3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 위 : 개 , m²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계	650,532	5,861,537.21	1,709,023,100,488	513	93,170.55	57,158,724,753	118	11,999.14	71,775,410,230	650,927	5,942,708.62	1,694,406,415,011
행정 재 산	636,916	5,036,545.72	1,517,086,804,565	466	92,188.55	43,580,706,565	25	6,960.95	5,352,257,639	637,357	5,121,773.32	1,555,315,253,491
일반 재 산	13,539	824,991.49	40,446,896,853	11	982.00	401,791,328	15	5,038.19	2,098,734,761	13,535	820,935.30	38,749,953,420
건설 중인 재 산	77	-	151,489,399,070	36	-	13,176,226,860	78	-	64,324,417,830	35	-	100,341,208,100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 위 : 개 , 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800	8,307,103,000	55	549,501,000	14	99,870,000	841	8,756,734,000

10) 지역통합 재정통계

(단 위 : 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8/1	854,789,525,643	761,893,654,419	92,895,871,224	2,480,167,300,992	41,527,507,633	1.67 %
지방자치단체(a)	18/1	854,789,525,643	761,893,654,419	92,895,871,224	2,480,167,300,992	41,527,507,633	1.67 %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0.00 %
지방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0	0	0	0	0	0.00 %

3. 전문위원 검토 의견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8% 내외로 최근 3년 간 큰 변동은 없으나, 불납결손액은 직전 연도 보다 약 2억 9천만원 가량이 늘어 났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입 결손금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액 비율이 직전연도 보다 1% 상승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직전 연도 대비 5억 6천만원 가량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집행을 제고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현액 대비 80% 미만으로 지출된 35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을 부진 원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 수준의 조성액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직년연도 보다 약 860억 증가해 전체 예산액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재정이 적기에 쓰이지 못하고, 한쪽에 고여있지 않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세출 부문에 과감한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심사결과 : 불임

[붙임]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 심사결과 시정(개선)요구서

I 심사 및 작성방향

-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및 결산 통합기준 준수여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 시정 요구서는 집행기관의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상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을 기본 전제로 하되,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권고) 사항을 작성하였음.

< 지방자치법 134조 ①항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심사결과

구 분	합 계	주 의	시 정	개 선	징 계	변 상
건 수	4	-	-	4	-	-

Ⅲ 주요내용

○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4건

연 번	시정 요구명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불납결손액 최소화	개선	동두천시 (전 부서)
2	성과목표 달성률 증대 노력	개선	동두천시 (전 부서)
3	기타특별회계 미수납금 징수 노력 강화	개선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교통행정과)
4	기금의 적정수준 유지 및 이자수입 증대 노력	개선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심사 시정(개선)요구서

1. 불납결손액 최소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 형	조치(검토)대상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입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 선	전부서
현 황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총 652,79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66,050백만원의 97.9%를 수납하였으나 ○ 불납결손액 1,421,274,110원이 발생하였음 ※ 연도별 불납결손액 현황 - 2021년 1,138,569,510원 - 2020년 1,810,951,940원		
지적 및 시정요구	○ 불납결손된 징수금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재산 발견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여야 하고, 재산 발견 시는 시효결손과는 달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징수하여야 함 ○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수납률 향상에 노력해 주기 바람.		

2. 성과목표 달성도 증대 노력 요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 형	조치(검토)대상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 선	전 부서
현 황	○ 성과목표 미달성(50% 미만) 주요 분야 - 기획감사담당관 : 수요자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30%) -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기업육성(0%), 국가산업단지기업유치 홍보(48%), - 문화체육과 : 치유의 숲 운영(45%) - 환경보호과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31%),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17%) - 전략사업과 : 자매 및 우호 도시 국제교류 추진(25%) - 투자개발과 :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50%) - 보 건 소 :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23%)		
지적 및 시정요구	○ 성과목표 미달성 분야 중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실적향상,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수정, 신규지표 개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기타특별회계 미수납금 징수 노력 강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 형	조치대상
관련법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 가산금	개 선	복지정책과 교통행정과
현 황	○ 2022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 149,430,720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 74,038,950원) ○ 2022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 1,106,739,690원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 1,103,708,880원) ☞ 미수납사유 : “납세 태만”		
지적 및 시정요구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직전연도 보다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함		

4. 기금의 적정수준 유지 및 이자수입 증대 노력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 형	조치대상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 선	기획감사담당관
현 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보유액 186,670,175,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860억 가량 증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중 정기예금 이율이 2% 미만인 계좌가 7건 발견됨(※현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지적 및 시정요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예산액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과감한 사업예산 편성 필요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예치 중인 정기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에 따른 비용과 신규 개설로 인한 이자수익을 비교하여, 예금이자 수익을 더 증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영 계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동두천시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2023년도 동두천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3. 6. 2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 두 천 시 의 회

- 목 차 -

I . 감사의 목적

II . 감사기간

III . 감사실시 대상기관

IV . 감사실시 과정

V . 감사우수 부서

VI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

환경보호과

정보통신과

농업축산위생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I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행정 사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장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

II 감사기간

- 2023년 6월 8일(목) ~ 6월 16일(금) (9일간)

III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청의 담당관·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IV

감사실시 과정

○ 감사반 편성

- 위 원 장 : 권영기
- 간 사 : 박인범
- 위 원 : 황주룡, 김재수, 임현숙, 이은경
- 사무보조 :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팀장 이일주, 입법정책팀장 김승진,
주무관 이태희, 주무관 김준영, 정책지원관 이진우,
주무관 나누리, 정책지원관 이경숙, 정책지원관 박희주

○ 감사일정 및 대상

일 자	감사대상
6. 8.(목)	◦ 홍보미래전략담당관 ◦ 자치행정과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6. 9.(금)	◦ 여성청소년과 ◦ 세무과 ◦ 회계과 ◦ 민원봉사과
6. 12.(월)	◦ 일자리경제과 ◦ 문화체육과 ◦ 관광휴양과
6. 13.(화)	◦ 환경보호과 ◦ 정보통신과 ◦ 농업축산위생과
6. 14.(수)	◦ 안전총괄과 ◦ 교통행정과 ◦ 공원녹지과 ◦ 도로과
6. 15.(목)	◦ 도시재생과 ◦ 건축과 ◦ 투자개발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6. 16.(금)	◦ 환경사업소 ◦ 시설사업소 ◦ 평생교육원 ◦ 기획감사담당관

○ 감사장소 : 시의회 회의실 (1층)

V

감사우수 부서

○ 감사우수 부서

구 분	선 정 부 서	비 고
최 우 수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장 려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VI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홍보미래전략담당관

1. 「제생병원」 개원 사전 준비 철저

의료 인력 및 장비 등의 문제로 제생병원 개원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바랍. 의료 인력 충원 관련, 군의관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 완전한 형태의 의대 신설이 어렵다면, 현재 대진대학교의 일부 과를 줄이면서 의과를 도입하거나 타 의과대학과 협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 바랍.

(박인범 위원)

얼마 전 시장과 범대위 대표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10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경기 동북부권역 공공의료

원’을 동두천에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의사협회 입장과 정부 기류가 의대 신설보다는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2.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방안 마련

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에 관해 기본적인 방향성과 원칙,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관련 예산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시 홍보대사를 일시적인 행사에만 잠깐씩 등장시킬 것이 아니라, 시 홍보에 꾸준히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기 바람. 꼭 연예인 등 유명 인사만을 고집하지 말고 평범한 우리 시민 중에서도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위촉 대상을 찾아보기 바람. (임현숙 위원)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소개된 시 정보·현황 등 점검 및 정비

포털사이트를 통한 시 홍보에 지출되는 예산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유력 인터넷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시 현황 자료에 부정적이고 부정확한 단어와 정보들이 등장함. 시 홍보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들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함.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되는 시 정보와 현황들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사이트에는 정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바람.

(김재수 위원)

4. 중앙 언론사(지상파, 종편) 등 대형 매체를 통한 시 홍보 강화

지역 매체를 통한 시 홍보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현재 시 홍보 전체 예산액의 7분의 1 수준인 지상파·종편 등 대형 매체에 대한 홍보 예산을 증액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5. 시 홍보대사 상세 현황 제출 및 예산 편성 계획 수립

시 홍보대사 상세 현황(위촉일, 해촉일, 활동 이력, 임기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지금보다 적극적인 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을 위한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6. SNS를 활용한 시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온라인 홍보 수단 발굴

온라인을 통한 시 홍보 활동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함.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는 SNS 홍보 수단을 발굴하고, 이미 활용 중인 온라인 홍보 매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SNS 활용 우리 시 홍보’와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강(상세 집행내역 포함)하여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7. 언론보도와 인터넷 여론에 대한 대응 철저

시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피드백)도 홍보에 있

어서 중요함.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여론(인터넷 댓글 등)에 대한 대응·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8. 시의회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철저

최근 시의원 3명의 5분 자유발언 관련 언론보도가 내부 행정망 시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에 전혀 게시되지 않았음.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 나아가 언론보도 스크랩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의 제안을 공유하고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의미도 있음.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시의회 관련 언론보도 내용이 내부 행정망 스크랩에서 빠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9. 참신하고 효율적인 시 홍보 방법(수단) 발굴 노력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참신하고 효율적인 시 홍보 방법(수

단)을 발굴하기 바람. 일례로 관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테이블보와 앞치마 등에 시 정책과 행사 등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온라인을 통한 홍보 인원 모집, 우수 실적에 대한 포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0. 「시 B. I. 및 캐릭터 디자인 변경」 관련 홍보계획 수립

시 B. I. 및 캐릭터 디자인 변경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즉시 원활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기 바람. 홍보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 자치행정과

1. 법정 국민운동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시정 발전 협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동이 여러 곳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에 비해, 이들 단체 회원의 노고에 대한 대우와 자긍심 고취에 필요한 예우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됨.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 등 지원을 강화(필요시 조례 개정 검토)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일부 동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한 상태임. 이 때문에 단체 신규 가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1인이 다수 단체에 가입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2.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

후생복지와 관련한 직원 만족도가 최근 상승하고 있음. 멘탈-케어 박람회, 심리 상담 지원 등 신규 사업 발굴·추진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3. 소수 직렬 배려 및 불공정 정실인사(情實人事) 근절 대책 마련

금일 내부 행정망 노조 익명 토론방에 인사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시되었음.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인사에 관한 직원들의 불만과 건의를 경청하기 바람.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비(非)행정직 소수 직렬을 충분히 배려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실인사(情實人事)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인사는 잘해도 50점, 못해도 50점” 이라는 말처럼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내·외부 인사청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 있는 공정 인사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4.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 관련 신중한 검토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에 있어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바람. 유사 수상 부문 통합과 통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당부함. ‘시민의 장’ 이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봉사한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며 모든 시민의 모범상(像)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5.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

타 지자체에 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리 시 소개 내용이 빈약함. 우리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기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당 홈페이지 콘텐츠를 정비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수단들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임. 더욱 효과적인 홍보 대상과 방법·수단을 선택하

기 바람. 기부 답례품도 우리 시가 널리 잘 알려질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6. 의원 요구자료 성실 제출(재강조)

시장의 정책과 정무 등을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 6월 16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7. 병가·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신속한 인력 보충

병가·휴직으로 인해 시청 전체 연평균 40여 명의 결원이 발생함. 결원 발생은 대직 근무자의 부담일뿐만 아니라, 업무 과중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하여 민원인에게도 피해가 될 우려가 큼. 병가·휴직으로 인한 결원 예측을 인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충원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8. 신규 임용 공무원 자체 교육 및 유관 기관 임직원 투어 프로그램

내용에 시 문화유산 등 소개 포함

신규 임용 공무원 자체 교육과 유관 기관 임직원 투어 프로그램에 (유적지 등 시설 정비 후) 시 고유의 문화유산과 보호수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9. 시 자원봉사단체 및 소속 회원 현황 정비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만여 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봉사자는 2천 4백여 명에 불과함. 이름만 등록한 채로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단체와 회원들을 정비하여, 성실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체와 회원들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청소년 자원봉사 여건 마련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

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홍보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1.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등 평가 철저

임기제 공무원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좌우하는 근무실적 등 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서장은 업무 성과와 근무 태도 등에 관한 평가를 철저히 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12. 각 동-자원봉사단체 간 MOU 체결 확대 독려

현재 활동 중인 170여 개 자원봉사단체와 8개 동 사이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이 확대되도록 독려하기 바람. 욕구 수준이 높아진 자원봉사 수요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각 동에서는 자원봉사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3. 6급 공무원 무보직 해소 노력

이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6급으로 승진했으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이 29명에 달함. 이들이 최대한 빨리 팀장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14. 신년 업무수첩 제작 계약을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방안 검토

신년 업무수첩 제작을 관외 업체에 맡겨오고 있음. 수주 능력만 있다면 되도록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5. 3·1절 기념식 우리 시 자체 개최 방안 검토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무게감을 보전대, 그 기념식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근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3·1절 기념식을 열고 있음. 우리 시 자체적인 3·1절 기념식 개최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 복지정책과

1. 보훈단체 지원 예산 증액 편성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예우가 안타깝게도 충분하지 않음. 보훈회관 개관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지만,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에 걸맞도록 보훈단체 지원 예산 증액 편성을 반드시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활성화 노력 및 적극 홍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 계획 인원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음. 되도록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3. 「국민행복카드」 사업 대상 인원 규모 명확화 및 홍보 강화

의원 요구에 의한 제출 자료가 불충분·불명확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함. 국민행복카드 사업 대상 인원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없으면 사업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도 어려움. 본인이 사업 대상임을 미처 알지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추진과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

노인은 물론 중·장년층에서까지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인간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사고임. 고독사 발생의 다양한 위험 요인(경제적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 단절, 정신건강 문제)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함. 공공 이불 빨래방이나 우유배달 등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위기 가구의 안부와 건강 상태 확인)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아울러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홍보

에도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5.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공동 벤치마킹 실시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제안 대회에서 발표된 결과물들이 순위를 매기기 어려울 만큼 모두 훌륭함. 노력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제안사업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수 동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8개동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6. 3·1운동 정신과 의미 함양을 위한 3·1절 기념식 자체 개최 검토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3·1절 기념식 자체 개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 사회복지과

1. 피해 아동 심리를 배려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 조성

학대피해아동쉼터 공사 추진 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울타리·조경 등 시설과 공간 조성에 신경 쓰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신호기 리모컨 지원 등 검토

관내 590여 명 시각장애인은 신호등 음성안내 버튼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음향신호기 리모컨 지급 등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3. 경로당 지원금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한 노인 불편 최소화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담하던 경로당 지원금 회계업무를 올해

부터는 노인지회에서 처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위해 원거리 경로당 노인들이 노인지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4. 「야간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적극 홍보

많은 시민이 호응하고 있는 야간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음. 더 많은 육아 가정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5.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 의회 사전 보고

어수정·생연1동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용역 관련, 배치 및 구역별 용도 설계 내역을 미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추진 검토

일부 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노인 우유배달, 공공 이불 빨래방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될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7. 사회복지 관련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 철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한 시설·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이후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지도·점검 이후 위탁기관이 이행한 시정조치 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 여성청소년과

1.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함. 현재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6명)만으로는 사후 관리가 어려우므로, 법사랑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청소년육성위원회」 즉각 구성 등

청소년기본법과 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현재 미구성 상태임. 청소년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의 구심점이 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도 함께 한다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박인범 위원)

3.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중 부적격 인사 배제

현재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 부적격 인사가 있다면 검토를 거쳐 배제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4. 공정한 「두드림청소년상」 수상 대상자 선정 노력 등

실제로 우리 시를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친 청소년들이 이번 두드림청소년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수상에 적합한 청소년들이 상을 받도록 홍보 및 수상 대상자 심의·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바람. 아울러 더욱 많은 청소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상식을 규모가 큰 청소년

관련 행사(청소년뮤직페스티벌 등)에서 실시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5.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재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장기간 폐쇄 상태인 (시민회관 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6. 「청년 공간 프로그램」 자체 발굴·개발 및 운영 지원

현재 외주 용역에 의하고 있는 청년 공간 프로그램을 우리 시 청년들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욱 알차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임현숙 위원)

7. 「청소년뮤직페스티벌」 개최 시기 신중 결정

축제성 행사인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을 굳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그것도 6·10민주항쟁기념일 당일에 열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임. 올바른 역사의식과 호국보훈의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임. 향후 행사 시기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은 되도록 「청소년의 날」에 개최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8.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노력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구체적 성과가 없음. 우리 시 일자리 지원 등 취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9.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 방문지로 우리 시 문화유적 우선 선정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 방문지에 정작 우리 시 문화유적이 제외된 것은 유감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시 문화유적을 방문지로

우선 선정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0. 「청년협의체」 조직 구성 완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등 청년협의체 조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청년정책 제안·시정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분과명 중 ‘동양대 분과’는 명칭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1. 시립어린이집 원장 장기 연임의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검토

시립어린이집 8곳 모두 동일인이 (위탁 기간 만료 예상 시점까지) 최대 10년에서 최장 16년까지 원장직을 연임하고 있음. 원장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로 경험과 연륜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기 연임으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없애고 더 많은 보육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원장 장기 연임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동일인의 원장직 장기 연임은, 젊은 보육교사들이 시립어린이집 원장직까지 승진할 기대와 희망을 접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2. 폐원 어린이집 활용 방안 모색

폐원한 어린이집을 관련된 분야의 다른 용도(돌봄센터, 상담센터, 쉼터 등)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기존 공간의 활용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임. (권영기 위원)

13.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2022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과는 예산 집행률 80% 미만

인 사업이 상당수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4.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사전 준비 철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방식은 위탁보다는 직영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람. 준공 전에 청년협업체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5. 의원 요구자료 성실 작성·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제출내용이 부실·부족하여 재차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음. 의원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6.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조속 추진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정식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음. 의원이 개발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별개로, 법에 따라 지자체장만이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조차 협조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해당 조례안의 운명은 결국 의회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임. 조례안 본회의 상정조차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즉각 추진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7. 보육시설 종사자(원장, 교사 등) 대상 교육 수준 제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면 보육교사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

가 있으므로 인성교육 위주로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8.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형식적 지도·점검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극히 일부겠지만, 근로계약과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함.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 사용과 회계 부정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 바람.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부당한 사례들을 적발하여 바로잡기 바람. (김재수 위원)

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우리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됨.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 **세무과**

1. 과오납 최소화 노력

2022~2023년도 과오납 현황이 심각함. 불가피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하더라도,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목표 설정과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3. 시효소멸 불납결손 최소화 노력

2022년도 불납결손액이 14억 원에 달함.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을 최소화하고 은닉재산 발견 및 사후 취득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강화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4. 「납세자보호관」 배치 부서 재검토 및 제도 홍보 강화

우리 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된 인력이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근무 중인데, 근무 부서에 대해 재고하기 바람. 타 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 활용 우수사례들을 참고하고 시민 대상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5. 미징수 세금·세외수입 최소화 노력

각 부서에서 징수 대상과 시기 등을 놓치는 세금·세외수입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세금·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세무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박인범 위원)

□ 회계과

1.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률 제고 노력 등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률이 2019~2020년도에 비해 저조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하도급 계약률을 높여야 함. 한편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지체·이행불능 등으로 문제가 되면,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 관내 업체와 시민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유의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하자 관리 철저

공공시설 안전 점검과 하자 관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철저히 하기 바람. 하자보수보증 기간 만료 시,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회계과에서 공공시설 하자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3. 공용차량 일괄 통합 관리 방안 검토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용차량들은 각각 주행거리와 이용률 편차가 크며, 이는 곧 공용차량 관리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짐. 회계과에서 시 전체 공용차량들을 일괄하여 통합 관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4. 시각장애인의 「주민참여감독제」 참여 방안 검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보통 각 동 통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도로와 보도블록 공사 감독 시에는 보행 어려움이 큰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5.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추진상황 보고

송내동 지역주민의 숙원인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의회에의 보고가 없음. 현재까지의 청사 신축 추진상황을 각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람. 완공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회계과가 관리와 점검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6. 지역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공공시설물 내부 공간 적극 활용

신축 예정인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우리 시 공공시설물 내부의 로비와 계단 등을 미술인 등 우리 시 지역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지역작가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임현숙 위원)

7. 공유재산 무단 점유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

공유재산 무단 점유 장기화 문제가 심각함. 현실적으로 각 부서의 재산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움.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료 징수 등으로 무단 점유를 합법화·양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 민원봉사과

1. 「자원봉사 행정사」 도입 검토

전문 자격과 지식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 무료 법률상담처럼 시민들이 행정기관 대상 업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칭) 자원봉사 행정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2. 악성·고질 민원인으로부터의 직원 보호

악성·고질 민원인으로 인한 직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대응 매뉴얼 점검, 보호·채증 장비 지급 등 직원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 일자리경제과

1.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 배가

산단 입주 희망 업체 수가 애초보다 줄어든 주된 원인은 예상보다 너무 높은 분양가 수준 때문임.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토교통부·LH와의 협상에 더욱 노력하고, 되도록 협의 진행은 문서에 의하기 바람. 분양가가 지금보다 최소 20~30만 원은 내려가야만 국가산단 입주 희망 업체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박인범 위원)

2.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및 취업 연계 노력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 자격증을 지금보다 더 다양화하기 바람. 자격증 취득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3. 「월드푸드 창업 교육」 사업 대상 확대 및 「월드푸드스트리트」와의 연계를 통한 청년 창업 기회 제공

월드푸드 창업 교육 사업 대상 인원을 늘리고, 「월드푸드스트리트」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청년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더 높이기 바람. (임현숙 위원)

4. 마을기업 활성화 노력 및 (가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검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마을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늘리고,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전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5. 기업 현황 자료 즉시 현행화 및 감사자료 상세 작성, 휴·폐업 사유 상세화

이미 오래전에 관외로 소재지를 옮긴 모 기업이 관내 기업으로 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음. 기업 현황 자료를 즉시 정확하게 현행화하기 바람.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서 빠진 휴·폐업 사유를 상세화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6. 상권진흥센터 기능·역할 등 홍보 강화 및 상인 자발 참여 유도

상권진흥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상인들이 많으므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널리 홍보하기 바람. 관 주도가 아닌, 상인들 스스로가 의사결정과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7. 기간제 근로자 등, 퇴직 공무원 채용 신중 및 장기 연임 타당성 검토

일자리 창출 사업·전통시장 매니저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시, 퇴직 공무원 채용은 그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기 바람. 노인 일자리 구직난이 심각한데, 동일인의 장기 연임은 ‘균등한 구직기회 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김재수 위원)

8. 「전통시장 매니저」 역할 홍보 강화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한 일반 상인들의 인지도가 낮음.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9.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저소득층 거주 지역 우선 공급 노력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0. 「두드림마켓 & 북카페」 판매 채널·홍보 방법 다양화 노력

두드림마켓 & 북카페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 타 지자체 사례

를 참고하여 온라인 등 판매 채널 다각화와 효과적인 홍보 방법 발굴에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11. 중앙시장 소방 안전 점검 철저 및 시설 현대화 추진

관내 전통시장 중 화재 위험이 가장 큰 중앙시장에 대해 즉각 소방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바람. 아울러 중앙시장 내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2. 공공일자리 대상자 공정·공평 선정 및 선발인원 확대

동일인 장기 독점 근무가 없도록 공공일자리 대상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정하기 바람.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선발인원을 더욱 확대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13.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부터의 이자 반환금 환수 철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 우리 시가 예치한 금액에 비해 반환된 이자액이 현저히 적음. ‘코나아이’와 소송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자 반환금 환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향후 이자 반환금 환수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14.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관련 특정 업체 수주 독과점 방지 노력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관련, 특정 업체 수주 독과점 논란 우려가 있음. 여러 업체에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15. 부서장 주관 기업인 간담회 확대·수시 개최

시장 주관 기업인 간담회 외에 별도로, 부서장과 팀장 및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기회를 자주 마련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 문화체육과

1. 수령(樹齡) 1천 년 보호수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 마련

시에 소재하는 수령(樹齡) 1천 년 보호수(경기도에 여섯 그루뿐) 바로 옆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될 예정이어서 유감임. 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보호수를 소재로 한 스토리 텔링 등을 구상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2. 시 향토 문화유산 보수·관리 철저

목행선 선생 묘역, 동점마을 암각문, 어유소 장군 사당, 사패지 경계 석, 탑동 석불 등 시 향토 문화유산들의 보존·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 동두천만의 고유한 향토 문화유산이 바로 최고의 관광 자원임. 오랜 시간 동안의 방치와 관리 소홀을 지금이라도 시정하여 시의 모든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와 정비에 착수하기 바람. 시 향토

문화유산들을 보수·정비·단장하고 그에 어울리는 스토리 텔링 등의
창안을 통해 시 대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3. 시 향토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 집행 회계 공문 부실 개선

향토 유적 안내판 설치 납품완료보고서의 금액 오기(誤記), 아무런 차
이가 없는 공사 전후(前後) 비교 사진, 납품완료보고서와 사진대지의 제
품 규격 불일치, 공사 후 안내판 크기 축소 등 문제점들이 시 향토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 집행 회계 공문(公文)에서 발견되었음. 이를
즉각 바로잡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임
현숙 위원)

4. 시 향토 문화유산 안내판 제작, 관내 업체 발주 검토

시 향토 문화유산 안내판 제작과 설치를 수년째 관외 업체가 맡고
있음. 관내 업체 발주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5. 시 고유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

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그간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해야 함. 이를 위해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6. 대회 출전 체육회 종목단체에 대한 효율적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시 체육회 종목단체에 대한 급식비 지원 기준이 현재 1인/1식 8천 원임. 체중 조절 등 경기 상황에 따라 식사를 제때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물가로 인해 8천 원대 메뉴도 찾기 어려움. 당장 급식비 인상이 어렵다면 종목단체들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액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7. 개최 효과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통합 및 예산 집중 방안 검토

시에서 개최하는 여러 문화예술 행사의 관람객 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초청 가수 등 출연진 인지도를 비롯한 공연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탓이라고 생각함.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예산 집중으로 격조 높은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여럿으로 분산된 문화예술행사를 통합하고 체육행사와 동시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공연 품질 향상과 다채롭고 새로운 공연 기획을 위해서는 행사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함. (임현숙 위원)

8. 야외 운동기구 담당 부서 일원화 및 통합 관리

관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로 나뉘어 있는데, 시민들은 개별 운동기구의 소관 부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관리 및 사고 민원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야외 운동기구 담당 부

서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야외 운동기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도 유의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9.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등 체육시설 규격 확대

체육시설 확충과 개선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함. 수요가 많은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들을 정식 규격으로 확대·신설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0. 국민체육센터 내 야구장 시설 변경 검토

국민체육센터 내 야구장이 펜스로 가려져 있어 주차장과 외부에서는 야구장 내부 전경을 볼 수 없음. 홈플레이트 위치를 반대로 바꾸면 외부에서 보이는 야구장 경관이 좋아지고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임현숙 위원)

11. 신천 둔치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방안 검토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가 있으므로, 신천 둔치 일대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2.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 행사」, 「소요 단풍문화제」 분리 개최 검토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 행사와 소요 단풍문화제는 상호 연관성이 크지 않아서 합동 개최의 효과가 작다고 생각함. 두 행사를 각각 별도로 분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13.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후 시민회관 활용 방안 마련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이 현실적으로 추진된다면, 이후의 시민회관 공연장 및 체육관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4. 지역자원 찾기 프로그램 마을 탐방코스에 향토 문화유산 포함

지역자원 찾기 프로그램 ‘동네로’의 마을 탐방코스에 시 향토 문

화유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5. 공공시설물 로비를 작품 전시 등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마련

지역작가들에게는 작품 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시설물 로비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6. 발달장애 아동 대상 자원봉사 미술 지도 활동 지원

자원봉사 의향을 밝힌 예술가들이 발달장애 아동 미술 지도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장소 등을 지원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7. 축산물브랜드육타운 MOU 체결, 의회 사전 협의 미이행 재발 방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활용 방안은 의회도 큰 관심으로 깊이 고민하는 사안임.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경기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함. (임현숙 위원)

18.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속 채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 채용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후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조속히 채용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 **관광휴양과**

1. 관내 관광 휴양시설 이용객 대상 지역 상품권 제공 방안 검토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조하여, 관내 관광 휴양시설 이용객에게 입장료 일부를 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사용처 확대, 사용기한 연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이용객 편의 시설 확충과 관내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관광 휴양시설 이용객 대상 지역 상품권 지급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지역 상품권에 시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 주요 지역 상권을 함께 소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2.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에 관내 주요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에 관내 가볼 만한 곳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3. 별안숲테마파크 카페 주변에 정원과 쉼터 조성

별안숲테마파크 카페 주변에 꽃을 심고 쉼터를 조성하고, 물놀이장 산속 앞면에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4. 자연휴양림 · 별안숲테마파크 온라인 홍보 강화

자연휴양림과 별안숲테마파크 이용객이 많은 이유가 시에서 실시한 홍보의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함.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용객이 많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의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다양한 경로로 시 관광 휴양시설 홍보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관련 부서와의 협조 등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도록 다양한 홍보 경로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5. (구)성병관리소 건물 처리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신중 검토

(구)성병관리소 건물 처리 방안을 놓고 ‘보존’과 ‘철거’ 양쪽 의견 대립이 팽팽함. 한편으로는 시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견해,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털고 미래를 위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관련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6. 자연휴양림 내 「유아숲」 시설 및 구조물 재정비 및 꽃·나무 식재

유아숲 입구 안내표지판이 없음. 유아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에 위험이 될 요소들이 일부 있음. 유아들의 체격과 발육상태를 고려한 시설·구조물 재정비를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유아숲 진입로에 꽃과 나무들을 심어 더욱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7. 「두드림뮤직센터」 운영·관리 및 홍보 강화

관람객은 늘지 않았는데 공연 계획 일정과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었음. 관리 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됨.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충원을 검토하기 바람. 관외에서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관리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8. 「월드푸드스트리트」 활성화 노력

월드푸드스트리트가 요리와 요식업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청년들에게 실습·창업의 학습과 경험 기회가 되도록 활성화하기 바람. 외식업 관련 특목고 등과의 연계, 관련 부서와의 협조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 환경보호과

1. 신천 색도 등 수질 개선 노력

신천에 이어진 양주시 소재 하천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함. 효천천 등 양주시 하천 오염도 관련 자료를 양주시의 협조를 얻어 제출하기 바람.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수질개선협의회에서 신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양주시 소재 하천들의 문제점을 논의해야 함.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수질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실질적인 신천 수질 오염원인 양주시와 일대일 정책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2. 지행역 주변 환경 정화

지행역사 벽면에 묻은 조류 배설물 등을 제거하기 바람. 지행역 인근 신시가지 상가 지역에 유출·방치된 유류로 인한 화재 우려가 크므로 조치하고, 고사 수목을 제거하는 등 지행역 주변 환경을 정리·정화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3. 공공화장실 관리 비용 산정 기준 등 자료 제출

공공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 계약과 관련한 비용 산정 기준 및 책정 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4. 악취 및 매연 문제 해결 방안 연구·검토

생활폐수 유출도 악취 문제의 상당한 원인임. 이를 포함한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매연 배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과 등 지도·점검 대책과 매연 저감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및 재활용 선별장 근무 환경 개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규상 위생·보건 기준에 맞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과 재활용 선별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과 재활용 선별장 악취 상태를 기술적으로 진단하여 실내 악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6.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 홍보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다소 저조함. 연납 할인 제도를 조기에 홍보하고 홍보 수단도 다양화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7. 전기차량 충전기 확충

전기차량 수요가 증가하는데 시 청사 내 급속충전기 2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관련 조례에 따라 시 청사 내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에이스아파트 등 불현동 주민들이 전기차량 충전기 추가 설치를 요구했음. 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전기차량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8. EM 보급통 디자인 개선 검토

관내 아파트단지와 공원 등에 설치된 EM 보급통의 색상과 디자인을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9.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처 확대

시 외곽지역에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처가 적음. 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처를 확대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철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지침」을 현행화하고, 각 동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들의 세부 위치를 포함한 목록을 통합 관리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11.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 시, 수주 능력이 있는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12.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매년 추가로 설치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단속 실적은 저조함.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 정보통신과

1. 「스마트빌리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대상 확대 및 첨단설비 유지·관리 철저

관내 지역아동센터들도 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여 교육과 놀이, 스포츠 등 분야에서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노인 복지시설에는 영양과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전 부서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기 바람. 첨단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2. 이미지·영상 로고 빔 설치 실태 점검 및 정비

시 홍보 효과를 높이는 이미지·영상 로고 빔의 위치와 각도 등 설치 상태가 다소 미흡한 곳들이 있음.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정비하고, 장기간 동일 이미지와 영상이 표출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3. 공공 무선인터넷 관련 상세 자료 제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공공 무선인터넷과 시정 홍보 알림이 등 홍보시스템의 예산 대비 효과가 작다고 보임.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공공 무선인터넷 처리 용량과 속도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4. CCTV 통합관제시스템 장비 교체사업 관련 물품 구매 상세 자료 제출

CCTV 통합관제시스템 장비 교체사업 관련 물품 구매에 관한 품목명, 단가, 수량 등 상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 농업축산위생과

1. 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 점검 철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적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농업 분야 드론 활용 교육 방안 검토

일손 부족과 농민 고령화로 농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드론을 농사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3. 「조산마을 하천보」 철거

2022년에 시가 약속한 조산마을 하천보 철거가 아직도 실시되지 않음. 하천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므로 속히 철거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4. 「국화전시회」 개최 재개

국화전시회 부활을 위한 부지 선정이 난항임. 기확보한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부지 일부에 주차장과 재배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국화전시회 개최 재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과거 많은 관광객의 호평을 받은 국화전시회가 반드시 다시 열리기를 바람. (박인범 위원)

5. 「스마트 농업」 활성화 대책 마련

「동두천시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육성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임. 스마트 농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시 전략투자사업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음. 조례에 의무화된 사항들을 정비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관련 업체 지원 방안 검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물을 주재료로 삼는 관내 요식업체가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 전망됨. 나아가 전반적으로 관내 요식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가 우려됨.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대책을 고민하기 바람. 관내 수산물 취급 요식업 현황 관련 성실한 자료 제출에 감사를 포함. (김재수 위원)

7. 시청 홈페이지 게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현황 현행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이 포함되는 등 현행화가 안 되어있음. 정비하여 현행화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8.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목표 달성을 제고 노력

도내 31개 시·군 음식점 위생 등급제 추진실적에서 우리 시가 상당히 뒤쳐져 있음(도내 시·군 평균 목표 달성률 60% / 우리 시 목표 달성률 43%). 업소 방문과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계도하여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바람. 한편 여름철 식중독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 안전총괄과

1. 재해·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철저 등

재해·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과 관련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재해·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재해·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고와 피해 접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아울러 지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재해·재난 대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 상황에 따른 경보 사이렌 음향 차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바람. (임현숙 위원)

2. 유사시 응급 복구 장비 신속 투입 태세 정비

재해·재난 발생 등 유사시에 응급 복구 장비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응급 복구 장비 계약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3. 지방하천·소하천 및 하수관로 신속 정비·점검

미군 부대에 소재하는 하천 등은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았고 하천 바닥이 높은 부분도 있어서 준설 등 정비가 필요함.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도 시급함.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4. 각종 축제 등 행사 안전관리 철저

축제 등 행사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이 촉박하거나 제출이 지연될 경우, 특히 군소 행사 진행업체가 맡은 행사 시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 이 점을 유의하기를 바라며, 다소의 시민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5. 시설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6. 재난감시용 CCTV 구매 관련 회계서류 미흡 처리 재발 방지

재난감시용 CCTV 구매 관련 회계서류에서 오류 등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장비 구매 관련 회계서류는 반드시 정확해야 함. 철저히 확인하여 재점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지적된 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 교통행정과

1.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최적·최선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노력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시, 관내 각 전철역 일 평균 이용객 현황 분석에 따를 경우, 동두천역이 아닌 덕정역으로 이용객이 몰릴 우려가 있음. 환승 체계와 시설을 비롯해 노선 연장과 관련한 전략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만, 역세권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GTX-C노선 연장이 동두천에 최적·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원인자 부담 조건으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게 될 경우, 이는 대통령과 도지사의 선거공약 사항이므로 시 인근 순환도로 나들목(IC) 신설 등 부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관련 계약 세부 명세 제출 및 스마트 기술 적용 음향신호기 설치 검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관련, 계약 건별 설치 일자 및 생산·시공 업체,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여부 등 세부 명세를 포함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아울러 스마트 기술 적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3. 공영버스 운행 시간 조정 검토

공영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이 20시에 종료되므로 학원 수업 후 귀가하는 학생들이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영버스 운행 시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황주룡 의원)

4. 도로 굴착 공사 신속 진행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 추진

한전과 각 통신사의 도로 굴착 공사가 길어져서 시민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음. 되도록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5. 적절하고 효율적인 신호등 설치 노력

가로수에 가려진 신호등,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되는 곳에 설치된 신호등들이 많음. 관내 신호등 위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며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6. 세아프라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신속 완료

세아프라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에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 문제를 일으킴.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7.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 부족 우려 및 밤샘 주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현재는 충분하지만 향후 부족해질

경우, 관외 거주자의 신청이 많아져 시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 피해도 염려됨. 예측되는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8. 조경수를 활용한 교통안전 펜스 설치 방안 및 불법 현수막 게시 방지책 마련

철제 구조물보다는 키가 작은 나무들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기설치 교통안전 펜스들이 불법 현수막 게시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방지할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9. 장날 도로변 장시간 불법주차 영업행위 강력 단속

5일 장날에 도로변에 차량을 장시간 불법으로 주차하며 영업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상권 보호와 교통안전에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10. 「소요산 광장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소요산 광장 조성 공사로 인해 소요산역 앞 보도 공간이 매우 좁아져서 고령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큼. 공사를 신속히 완료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1. 운전면허 미인증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 영업 제한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검토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 업체 중 운전면허를 인증하지 않고도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영업 제한을 검토하기 바람. 아울러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 실시를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2. 장기 무단 방치 차량 폐차 제도 홍보 확대

여러 이유로 인해 자진 폐차가 어려운 시민들이 장기 무단 방치 차량 폐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 공원녹지과

1. 「도심숲 조성」 적극 추진

도심 녹지 환경은 시민 정서 안정과 미세먼지 완화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도심 곳곳의 비어있는 공간에 나무와 꽃을 심어 도심숲을 조성하기 바람. 아울러 보산동의 경우 관광특구 구역 개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보산동 마을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약수터 수질 및 주변 환경 개선·관리

계속해서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약수터들의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약수터 주변 시설과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3. 보호수 및 주변 환경 관리 철저 및 보호수 관련 스토리 텔링 구상

시 소재 보호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이 시급함. 보존과 관리를 먼저 철저히 하고, 보호수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스토리 텔링 등을 관련 부서와 함께 구상하기 바람. 행단제 등 제례가 열리는 보호수 주변 환경 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4.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안 모색

음향 장비를 드론에 탑재하여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드론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5. 시 홈페이지 「어등산 힐링 체험 숲」 안내 사진 등 교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어등산 힐링 체험 숲 안내 사진을 보다 더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사진으로 교체하기 바람. 이 외에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내 공원과 숲 안내 사진 현황을 점검하여 정비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6. 어린이공원 보행자 통로 조성 공사 사후 정비 철저

조성된 어린이공원 보행자 통로에서 보도블록 파손 등 민원이 발생

하고 있음. 되도록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에 정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7. 식목일 행사 시,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묘목 품질 개선 검토

올해 식목일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배부된 묘목 일부가 생장 불가 묘목이었음. 식목일 행사의 취지에 걸맞도록 배부 묘목의 품질 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8. 어린이 놀이터 모래 관리 철저

일부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잡초가 나 있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음. 관내 어린이 놀이터들의 모래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9. 야외 운동기구에 관리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이담초등학교 옆 공간에 설치된 운동기구 정비공사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관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부서가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로 분리되어 있어서 운동기구와 관련한 문의와 민원 제기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각 운동기구에 관리 부서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한편 ‘스카이-워크’ 운동기구는 위험해 보이므로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10. 지행역 안내표지판 주변 나무 전지 및 「봄맞이 환경 개선 사업」 계속 추진

지행역 인근 안내표지판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음. 해당 지역 주변 나무에 대한 전지 작업을 실시하기 바람. 원도심 지역 「봄맞이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은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봄맞이 환경 개선 사업」 식재 초화류를 다년생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1. 각종 공모사업 적극 참여

최근 공모사업 참여율이 저조함. 시 발전과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2. 신천 둔치 시설관리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협조 강화

신천 둔치 시설관리 계획 관련 전 구간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구역별로 담당 부서가 달라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어려움. 타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 수립 시부터 상호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13. 5060 청춘 로드 가로변 식재 소나무 관리 철저

5060 청춘 로드 가로변에 식재된 소나무 중 3그룹이 고사 위기임.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가로수 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 도로과

1. 「국지도 39호선 건설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국지도 39호선은 동두천과 남서울·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잇는 물류 경로이자, 시민들이 서울 서북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임. 상패~청산 간 도로 개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증가할 교통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2026년에 확정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지도 39호선 건설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관내 교량 안전 점검업체 관리·감독 철저

최근 발생한 타 지자체의 교량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교량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업체가 제대로 수임 사무를 처리하게끔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3. 에이스 5차 아파트 진입로 주변 불법 적치물 제거

에이스 5차 아파트 진입로 인도에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 등 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이 차도로 보행하고 있으니, 즉시 제거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4.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 설치 현황 점검 및 개선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 보도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음. 잘못 설치된 점자 보도블록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기 바람. 타 지자체와 타국의 우수 사례도 참고하기 바람. 아울러 설치 위치에 따라 시공 업체가 각기 다를 경우에도 일관된 설치·시공 기준을 따르도록 안내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5. 「동두천중앙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속 완공

제일산부인과 사거리~부영 5단지 아파트 구간의 동두천중앙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구간을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6. 도로변 제초·잡목 제거 공사 시행 철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변 제초·잡목 제거 공사 실시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반드시 실시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7. 회전교차로 인근 신호등 설치 필요성 재검토

어수로 확장공사와 함께 조성된 회전교차로 인근의 점멸신호등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신호등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집중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많음. 향후 회전교차로 조성 시에는 신호등 설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8. 하자보수 관리대장 비치 및 이력 관리 철저

도로 하자보수 관리대장이 없음. 부서 자체 관리대장을 만들어 하자보

수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9. 도로 개설·확장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 병행

일단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차후 해당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 도로 개설·확장 공사 추진 시, 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를 반영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10. 「동우로」 정비 및 단장 추진

동우로는 시 외곽 봉양 IC로부터 광암동 놀자숲까지 이어지는 동두천의 관문으로 외부 관광객이 동두천에 들어오는 경로인데, 현재 도로와 인도 일부 구간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음. 동우로를 정비하고 단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 도시재생과

1. 개발행위 진행 지역 안전 관련 지도·점검 철저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지역은 붕괴, 전도, 토사 유실 등 위험이 크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개발행위 중단 방치 현장을 점검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탐동 골프 리조트 조성」 공사 관련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탐동 골프 리조트 조성」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주체와 주민들 사이 소통 중재에 노력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농약 검출 사태로 주민 불안이 큼. 탐동 골프 리조트 조성 공사 시, 저류조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점검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 노력

공모사업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자원이 부족해 보임.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4.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시, 문화유적 보존 방안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등 공사 관련 심의 시, 개발행위 등으로 시 문화유적 보존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5.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검토 등

오랫동안 시민 불편을 초래해 온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진출입로를 주변 건물 매입 등을 통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중앙시장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되므로 해당 지역 도로 확장도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6.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응모 노력

국·도비 지원을 통한 사업 시행을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7. 성매매집결지 폐쇄 적극 추진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8. 상패동 신한대학교 주변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상패동 신한대학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9. 개발행위 허가·반려 등 처리결과 현황 자료 제출

2023년도 개발행위 허가 추진실적 중 허가와 반려 등 처리결과 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 건축과

1. 건축허가 시, 시민 안전 및 편의 우선 고려

건축허가 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을 권장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청년·신혼부부만이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과 경제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3. 주거환경정비사업 주도면밀 추진

정주 환경 개선을 염두에 둔 더욱 주도면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4. 「우리 동네 도시미관 정비」 사업에 어린이 시설 포함 검토

우리 동네 도시미관 정비 사업에 보산동 일대 빈집을 이용하여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의원)

5. 송내주공 4단지 아파트 공용도로 상 이끼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

송내중앙중학교 후문 쪽 송내주공 4단지 아파트 공용도로에 이끼가 많이 끼어 통행 불편을 초래하므로 제거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6.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추진

우리 시도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위험 지역임.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7.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설명(현장 즉시 답변 완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쪽의 위반건축물과 양성화가 무엇인지 설명 바람. (이은경 위원)

□ 투자개발과

1. 결산동 주민에 대한 미군 부대 출입 패스 발급 적극 추진

결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미군 부대 출입 패스가 발급되지 않고 있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정당한 통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출입 패스 신규 발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주요 사업 진행 경과 의회 보고 철저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진 축산물브랜드육타운과 관련한 MOU 체결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음.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주요 사업 진행 경과를 제때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3. 의회 제출 자료 성실 작성 및 주요 공사 진행 현황 의회 보고 철저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최근 1년간 추진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빠져있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좀 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작

성하기 바람. 부서 주요 업무가 토목·건축 공사 추진이므로 현장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장기간에 걸친 공사 현황은 최종 결과 보고 이전에 수시로 의회에 중간 보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4. 행복드림센터에 어린이·청소년 전용 체육관 설치 추진

건설 중인 행복드림센터에 어린이·청소년 전용 체육관을 포함하자는 의회의 지속적인 제안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임. 의회 제안을 다시 검토하기 바람. 향후 공공시설물 건립 시에는 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5. 「한·미 우호의 밤」 행사 내용 재검토 및 보완

한·미 우호의 밤 행사가 그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사 내용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6. 차질 없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기반 조성」 사업추진

타 부서 사업 중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집행된 경우가 있음.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기반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추진상황을 향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7.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추진 관련 각계 의견수렴 철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별안 숲테마파크’에 인접한 사업 위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8. 「미군 장병 한국 역사·문화 현장 견학」 대상지 관내 우선 선정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관외보다는 관내 역사와 문화 현장을 우선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 소재하는 역사·문화 현장을 견학대상지로 우선 선정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9.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소송 원활한 마무리 및 주변 환경 정리

진행 중인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사업 현장 주위 하천 일대의 물품 철거 등 주변 환경 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0.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 타 사업과의 중복 방지 등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 대상 구역과 타 부서 사업 구역이 일부 중복됨. 해당 부서와의 소통·협력으로 사업 중복을 피하기 바람.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트렌드 변화에 맞춰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11.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주변 벚꽃길 조성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주변 도로에 내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건강한 벚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 보건행정과

1.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마련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었지만, 롱-코비드(후유증) 문제 등 남은 과제가 많음. 코로나19 후유증 대처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2. 여름철 방역 활동 관련 보건소 - 시민 간 연락체계 구축

여름철 방역 활동과 관련해 보건소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시민 불만이 큼. 방역 활동 관련, 보건소와 시민 사이 원활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3.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 정상 운영을 위한 관리 철저

시 예산을 지원받는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 이용과 관련한 시민 불편과 불만이 큼.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4. 의료 장비 내구연한 엄수

내구연한이 지난 고가 의료 장비가 일부 있음. 의료 장비는 제대로 된 성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내구연한 경과 장비 사용은 지양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 건강증진과

1. 내구연한 경과 의료 장비 교체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 장비는 판독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청소년 임신부 전용 상담 공간·쉼터 마련 검토

청소년 임신부의 특성을 배려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상담 공간과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3. 사업 대상 특성을 고려한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구매」 사업추진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구매’ 사업추진 시, 임신부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임을 세심하게 고려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4.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방안 마련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우리 시에 접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5.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추진

담배의 해악과 알코올 남용 위험성을 조기에 깨닫도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절주 등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 환경사업소

1. 노후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차질 없이 추진

구도심의 노후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는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추가 계획 중인 구간에서도 분류화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북쪽 구도심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수의계약 대상 선정 객관적 기준 마련

관내 중소기업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대상으로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고려하기 바람. 수의계약 대상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3.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재검토 및 정확한 현황관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재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 검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수질검사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4. 색도 개선사업 차질 없이 추진

색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예산 재반영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5. 양주시 하수처리 부담금 미납분 징수

양주시가 부담하는 하수처리 부담금 미납분을 징수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6. 가축분뇨 처리시설 고장으로 인한 폐수처리 불가 사업장 처리 대책 설명(현장 즉시 답변 완료)

가축분뇨 처리시설 고장으로 폐수처리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7. 미급수 지역에서의 상수도 공급 적극 추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체하지 말고, 미급수 지역에 조속히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민들 합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8.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 추진 철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9. 신천 악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생활폐수 문제 해결 노력

신천 악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생활폐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 시설사업소

1.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간이 넓으면서도 이용률이 저조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계획적인 시민회관 리모델링 등 공사 추진 및 최신 장비 구비 등

작은 리모델링 공사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시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리모델링 등 공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되도록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추진하기 바람. 여러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이므로 공통 이용 장비는 최신형으로 구매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현재 시민회관 체육관 무대는 장애인 통행이 불편하고 공간이 좁음. 시민회관 체육관 무대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3. 시민회관 주차장 투수블록, 아스콘으로 교체

시민회관 주차장은 노후로 인하여 하자가 많이 발생했음. 다양한 행사 개최로 유동 인구와 차량이 많으므로, 주차장 바닥을 투수블록에서 내구성 높은 아스콘으로 교체하기 바람. 교체 후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에 적시 조치하여 예산 낭비를 막기 바람. (이은경 위원)

4. 종합운동장 의자 열선 설치 검토

동절기에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의자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 평생교육원

1.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대비 철저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되고 있음. 지금까지는 학생 수와 지원 금액 등이 양주시보다 적어서 교육 정책에서 양주시가 우선시 되어왔음. 향후 교육지원청이 분리되어 동두천 교육지원청으로 독립할 경우, 동두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입시설명회 개최 추진 등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노력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 개최를 여러 차례 당부한 바 있음. 초등학생 때부터 학부모들이 대학입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 조기 개최를 검토하기 바람.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교육 정주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3.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선정 관련 시민 수요 파악 등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프로그램 선정 시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단순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분리 운영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보완하기 바
람. (이은경 위원)

4. 「성인 발달장애인 창작 미술교육」 확대 추진

성인 발달장애인 창작 미술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정서 함양과 자긍

심 고취에 매우 긍정적이며 미술인들의 호응도 좋은 사업임. 추후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5.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작은 도서관은 소외 지역 시민들을 위한 지식복지 차원의 서비스이므로 단순히 이용실적만을 논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와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예를 들면 조용한 도서관보다 약간의 소음이 있는 카페와 같은 장소를 공부 장소로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 조성 등을 고려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6.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검토

직장인과 학생들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관내 도서관들은 오후 5~6시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음. 타 지자체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관 운영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음. 도서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이은경 의원)

7. 비치 도서 다양화 및 「사람책 도서관」 활성화

시민들의 지식 욕구 충족을 위해 더욱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사람책 도서관은 직접 대화를 통해 작가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더욱 확대·활성화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8. 공연장 시설 대관 시간대 연장 검토

공연장 시설 대관 시간이 사실상 평일은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일요일은 대관 신청 접수를 하지 않고 있음. 평일 야간과 일요일

행사 개최를 원하는 시민과 단체가 불편을 겪고 있음. 관련 조례에서도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 대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 행사 개최가 많은 시기에라도 탄력적으로 대관 시간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9.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확대 및 방문 접수 병행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일부 자격증 프로그램들의 유행이 지났음. 타 지자체의 경우 최근 선호도가 높은 자격증 과정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민 수요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자격증 과정들을 발굴하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최근의 시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강좌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바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온라인 접수와 함께 방문 접수도 병행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10. 시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추진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와 양성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1. 프로그램 신설·개편 시, 시민 의견 적극 반영

시민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신설·개편하기 바람. 우리 시 지적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함. (박인범 위원)

12. 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영상물 제작 및 배포 검토

특히 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실시가 쉽지 않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안전한 이용을 안내하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학교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1. 재정자주도 제고 노력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확보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바람. (박인범 위원)

2.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한 의원 정책 제안 적극 수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공개 석상에서 표명되는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의원의 의견 표명은 곧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성의껏 검토하여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3.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에 조례에 따른 공개사항 적시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 개최 시에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제대로 공표·안내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는 시민 알권리 증진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됨. (임현숙 위원)

4.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검토 역할 강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검토가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더욱 세심하고 깊이 있는 용역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5.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시 홈페이지 게시 철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이 장기간 현행화되지 않고 있음. 시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현황 자료를 정비하여 신

속히 게시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의 증대 노력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치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7. 각종 기금 이자수의 극대화 노력

고금리 시대에 시에서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기금 운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용 전략을 다듬기 바람. (김재수 위원)

8.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 재검토 및 일반회계로의 편입 검토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재

검토하고 일반회계로의 편입을 신중히 고려하기 바람. 사회복지기금 준치가 불가피하다면 지금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들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람. (김재수 위원)

9. 의원 요구자료 성실 작성·제출 및 제안 공모 수상작 적극 활용

제출된 의원 요구자료에 오기(誤記)와 누락 등이 적지 않음. 의원 요구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때 제출하기 바람. 각종 제안 공모 수상작들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시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이라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10.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자체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바람. 전보 발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독려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11. 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 노력 및 시정 총괄부서 역할 강화

시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람.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획감사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그에 충실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12. 시민 표본조사와 통계 시스템 등을 활용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

더욱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민 표본조사 및 통계 시스템을 활용하기 바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박인범 위원)

시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3. 자치법규 일제 정비 후 의회 보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과 인용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전반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은경 의원)

14. 의회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증원

입법정책팀 신설과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의회 인력이 보강되었음. 이에 상응하여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집행부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의회법무팀 내 의회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증원을 검토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15. 각종 소송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 조정

우리 시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승소 인센티브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은경 위원)

16. 시 B. I. 및 캐릭터 변경 완료 후 교체 작업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 우선 고려

시 B. I. 및 캐릭터 변경 완료 후 교체 작업을 위한 물품·용역·공사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7. 시 B. I. 및 캐릭터 외 시조·시화·시목 등 유지 여부 검토

시 B. I. 및 캐릭터 외, 시조·시화·시목 등 상징물의 현행 유지 여부도 고민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

18. 「소리이음마당」 등 미진행 사업 재점검 및 재검토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을 점검하여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19. 하도급 부조리 신고 등 민원 실태 점검

최근 관내 모 시설 공사가 하도급 업체의 문제로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음. 이에 연관되어 손해를 입은 관내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음. 하도급 부조리 신고 등 민원 실태를 점검하기 바람. 한편, 중단된 공사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약속한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면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점검하기 바람. (황주룡 위원)

20.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시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방안을 계속 연구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21.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시 인구 증가 계획 수립 · 추진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보다 더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인구 증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람. (임현숙 위원)

22. 「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따른 후속 계획 신속 마련 및 의회 보고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는 안보 희생에 대한 귀한 성과로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큼. 우리 시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시행에 대응하는 추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권영기 위원)